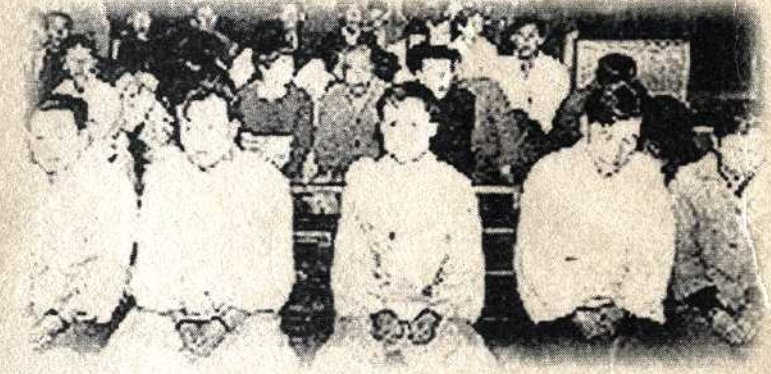


“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 / 상고 · 항소이유서 자료집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인혁당재건위사건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CPb1.87

천주교
인권위

인혁당대책위원회를 후원해 주십시오

인혁당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거청산 작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뜻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농협 027-12-092791 ☐신한 218-12-056295 (예금주 이돈명)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돈명 박형규 문정현

“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 / 상고口항소이유서 자료집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그날을 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고 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고

거리의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은 웃음짓고 간혹은 소리치며 어떤이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꾸러미를 들고

또 어떤이는 선물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날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을 뿐입니다.

먹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며 역새같은 장대비가 한없이 쏟아지는 그런날도 아니었고

단지 맑게 갠 하늘에 4월의 황사가 얇게 낀 하루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겐 그날 하루가 잊혀져 지나가 버리는 일상의 하루였을 뿐이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겐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라다녔던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남편을 잃은 여인네의 눈물.

그 조각난 가슴속에서 끊이질 못하고 솟아오르는 눈물.

아들의 주검앞에서 소리쳐불러보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외침.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남은 건 빼앗긴 추모비의 흔적뿐인데 설마 죽이라 생각했지만.

설마 죽이라 생각했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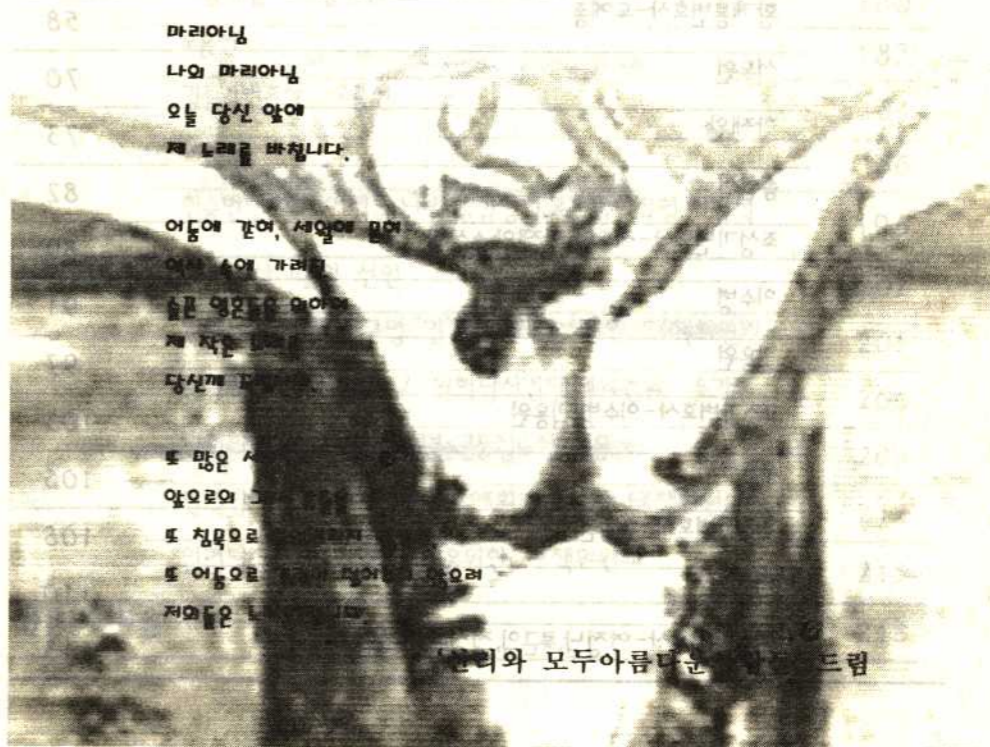
마리아님

나의 마리아님
오늘 당신 앞에
제 노래를 바칩니다.

어둠에 갇혀, 세상에 갇혀
이제 손을 가리켜
슬픈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작곡한 노래
당신께 바칩니다.

또 많은 사
앞으로의 그
또 침묵으로
또 어둠으로
저희들은

그날을 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고 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고
거리의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은 웃음짓고 간혹은 소리치며 어떤이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꾸러미를 들고
또 어떤이는 선물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날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을 뿐입니다.
먹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며 역새같은 장대비가 한없이 쏟아지는 그런날도 아니었고
단지 맑게 갠 하늘에 4월의 황사가 얇게 낀 하루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겐 그날 하루가 잊혀져 지나가 버리는 일상의 하루였을 뿐이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겐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라다녔던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남편을 잃은 여인네의 눈물.
그 조각난 가슴속에서 끊이질 못하고 솟아오르는 눈물.
아들의 주검앞에서 소리쳐불러보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외침.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남은 건 빼앗긴 추모비의 흔적뿐인데 설마 죽이라 생각했지만.
설마 죽이라 생각했지만 ...



한리와 모두아름다운 드림

인혁당제권위사건

제심청구 / 상고 . 항소이유서 자료집

목 차

제심	제심청구서	6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조사자료		
	직권 84호 장석구 사건 중간 발표문	25
	결정문	41
상고이유서	도예종	53
	황계룡변호사-도예종	58
	서도원	70
	하재완	73
	송상진	82
	조성기변호사-서도원, 하재완, 송상진	89
	이수병	91
	김용원	97
	조승각변호사-이수병, 김용원	103
	우홍선	106
	김종길변호사-우홍선	108
	여정남	110
	한승헌변호사-여정남, 류근일, 정상부, 이직형.....	113

항소이유서	도예종	128
	황계룡변호사 - 도예종	132
	서도원	136
	조성기변호사 - 서도원	144
	하재완	145
	조성기변호사 - 하재완	154
	이수병	156
	조승각변호사 - 이수병	161
	김용원	163
	윤의준변호사 - 김용원	170
	송상진	173
	조성기변호사-송상진	180
	우홍선	182
	김종길변호사 -우홍선	184
	여정남	186
	한승헌변호사-여정남, 나병식, 김영일, 유근일, 이직형, 서경석	195
성명서모음	각계인사 1천인 선언	202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205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 인혁당사건대책위원회 유가족	206
	민청학련관련자 명예회복 공동접수자 일동	209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212
	인혁당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 대책위원회	215
언론보도모음		218

재심청구서

청 구 인

1. 강 순 희(피고인 망 우홍선의 배우자)

서울 은평구

2. 김 진 생(피고인 망 송상진의 배우자)

대구 동구

3. 배 수 자(피고인 망 서도원의 배우자)

대구 수성구

4. 이 영 교(피고인 망 하재완의 배우자)

대구 동구

5. 이 정 숙(피고인 망 이수병의 배우자)

서울 강동구

6. 유 승 옥(피고인 망 김용원의 배우자)

고양시 일산구

7. 여 군 자(피고인 망 여정남의 누나)

대구

8. 신 동 숙(피고인 망 도예종의 배우자)

대구 달서구

청구인들의 변호인 : 별지와 같음

재심청구취지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1.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5, 16호 판결 중 피고인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에 대한 부분,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 중 피고인 여정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

재심청구이유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은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를, 피고인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은 “서울지도부”(이하 총칭하여 “인혁당재건위”라 부릅니다)를 각 조직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며,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부릅니다)의 조직 등에 관여하여 전 인민적 봉기를 유도하려고 한 사실 등으로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의 74비보군형공 제15, 16호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원판결이 확정되어 1975. 4. 9. 사형을 집행당한 자들이고, 피고인 여정남은 위 “경북지도부”의 학생조직책으로써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한 사실 등으로 1974. 7. 13. 비상보통군법회의의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원판결이 확정되어 1975. 4. 9. 사형을 집행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원판결은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피고인들은 무죄임이 명백함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은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우홍선의 배우자인 청구인 강순희, 피고인 송상진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진생, 피고인 서도원의 배우자인 청구인 배수자, 피고인 하재완의 배우자인 청구인 이영교, 피고인 이수병의 배우자인 청구인 이정숙, 피고인 김용원의 배우자인 청구인 유승옥, 피고인 여정남의 누나인 청구인 여군자, 피고인 도예종의 배우자

자인 청구인 신동숙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재심사유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1. 3. 17.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관련자인 장석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결정을 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국방부 검찰단, 서울구치소, 정부기록보존소 등으로부터 20,000여쪽 분량의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열람한 뒤, 고혜경 등 129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직권 제84호 장석구 사건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수사과정에서는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하여 조작되었고,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변론권이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위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조직하였다는 “인혁당재건위”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재심사유별로 상술하겠습니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사유

원판결의 증거를 보면,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되는 각 진술부분’이 게시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공판조서 자체의 기재가 조작된 것임이 위 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① 당시 74비보군형공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함승헌은 “피고인들은 1심 재판때에도...모두가 검찰관과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 및 자필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 ② 원판결의 피고인 김종대의 변호인이었던 박승서 또한 “내 기억으로 어느 누구도 인혁당의 재건을 기도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종대를 비롯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인혁당’은 물론 어떠한 이름의 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 ③ 원판결의 피고인 유진곤의 변호인이었던 함정호는 피고인 이수병을 상

대로 검찰이 ‘피고인은 1973.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583의 11 소재 상피고인 김용원가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을 구성하라는 지령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이수병이 ‘네. 만나 모의한 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하재완 등 일부 피고인이 북한 방송을 청취 수록한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혁당은 물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유혈폭동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모두가 부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 ④ 당시 교도관이었던 김광식 또한 재판정에서 지하 비밀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변란시키고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시인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것처럼 조작된 공판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판결한 원판결은 마땅히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공판조서는 위법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도 조작되어 있는바, 위 함승헌은 판결문에 ‘1974. 7. 2. 제14차 공판기일에’ 1974. 7. 5. 13:00와 1974. 7. 6. 10:00 비상보통군법회의 법무사실에서 수명법무사가 증인심문을 행할 것 “을 고지하고 각 관계인의 출석을 명하여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하였음을 볼 수 있고...”라고 실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74. 7. 2.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증인심문기일에 피고인들의 출석을 명하거나 증인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린 바가 없으며 구속피고인의 출정을 가능케 하는 소환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변호인들이 모두 증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사유

위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중앙정보부의 수사개입 및 조작의 점

위 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중앙정보부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수사관에게 수사방향 및 내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① 경북도경 파견 경찰로서 피고인 서도원, 도예중 등을 조사하였던 박재명은 “모든 정보를 정보부에서만 독점을 하고 저희들에게는 가르쳐 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부에서는 저희들에게는 단편적인 정보만 주고 쪽지에 조사할 내용을 적어주면서 오늘은 누구를 이런 내용으로 조사하라는 식으로 지시만 했습니다.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술서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자신들은 자술서를 보고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술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는 수사팀과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는 수사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정보부 직원과 현병이 입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② 경북도경 파견경찰로 피고인 도예중, 하재완을 수사하였던 신흥수는 최초 조사시 “조사할 때 거의 항상 정보부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조사시에는 “(수사방향을)저희 수사관들끼리 모여서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거의 다 윤종원이 조사의 방향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 ③ 영등포 경찰서 파견 경찰이었던 전재팔은 “월 1~2회 정도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과 팀장 등 30명가량이 중앙정보부에 모여 회의를 하였고, 각 팀에서 수사내용을 브리핑을 하였고 수사 관련 보장 지시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짜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④ 경북도경 파견경찰이었던 이덕삼은 최초 조사시 “윤종원이 조서와 진술서를 취합하고 지휘를 하였습니다. 중정에서 와꾸(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고 우리는 이에 맞춰서 중정에서 시키는 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부인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진술조서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옆에서 대화를 들어보니 대구 분실 직원이 윤종원에게 참고인들이 정만진의 긴급조치 비방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이때 윤종원은 여기에서 (정만진이) 시인을 했으니까 어

떻게든 시인을 하게 만들어서 (서울 중앙정보부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수사지휘차원을 넘어서 수사내용까지 미리 만들어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두 번째 조사시 윤종원 등 중정의 간부들이 이 사건을 긴급조치 사건에서 조직사건으로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원이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물건(조직사건)을 만들어라’ 고 지시한 사실도 기억이 납니다.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 면 탐문과 증인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윤종원의 지시에 따라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⑤ 당시 수사과 형사로서 인혁당 관련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창일 등을 조사하였던 나갑열은 중앙정보부로 파견되어 군 수사기관 출신 간부로부터 조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조사할 때 중앙정보부나 대구수사팀으로부터 어떠한 자료 또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조서를 받았으며, 전창일 등을 인혁당 관련자로 조사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인은 “저는 위 두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입회도장을 찍은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실질적인 수사를 중앙정보부에서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수사의 경우도 경찰과 다를 바 없었던바,

- ① 당시 공군법무관으로 검찰관이었던 이원무는 “내가 검찰관으로서 들은 사실은 중정에서 받은 대로 조서를 받아내라는 것이었고 그 외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상이한 진술이 있어도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중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맞춰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② 당시 보통군법회의 검찰서기였던 이상대는 “문호철 검사가 중정의 윤계장과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검사가 윤계장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통화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③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찰서기로 근무하였던 김강진은 사건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했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관이 증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기초하여 혐의 사실을 물었고 피의자가 하는 응답 역시 증정의 의견서에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검찰관들이 중앙정보부의 의견서를 베끼다시피 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수사팀장 윤종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에 탐문조사 등 사전조사를 한 사실은 일체 없었고, 피고인들이 조직을 결성하였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자신이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팀장으로서 경찰수사관들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매일 보고받은 사실을 시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윤종원은 인혁당재건위 조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음을 시인하였고(심지어 위 조직의 강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청학련 배후조종의 점에 대해서도 “민청학련은 유인태가 총괄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했고 인혁당재건위에서 배후조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여 수사관들이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음에도 중앙정보부에서 배후조종하였다고 발표하였고 그 발표문대로 기소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위 윤종원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서명은 독특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조작이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 수사가 종료된 후에 중앙정보부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내용을 수사내용과 다르게 조작·발표된 점 또한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로 입증되고 있는바,

① 위 박재명은 최초 조사시 “저희들 경북도경 파견 경찰들은 도예중, 서도원 등이 여정남을 통해서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내용의 조사를 받아오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의 지시에 의거해서 20일 가량 조사를 한 다음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 조사는 정보부 수

사관들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인혁당 재건위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조사시에도 “제가 조사를 하러 서울에 올라갈 때는 단지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알고 있었고, 역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혁당이라는 조직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증정에서 이 사건을 발표할 때에 보니까 인혁당재건위라는 조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② 위 신흥수 역시 “저희들은 인혁당 재건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보부에서 최종 발표를 할 무렵에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③ 같은 경북도경 파견경찰로서 피고인들을 조사하였던 손중덕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증정에서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발표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분명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순수 대공 사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④ 위 이덕삼 역시 “저는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인혁당 재건위라는 이름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대구 북부서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야 처음으로 인혁당재건위라는 이름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증거에 대해서도 “하재완이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자백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난수표나 강령 등은 없었고 자백 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2) 수사서류의 허위기재의 점

(가) 수사 장소의 허위기재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등의 작성 장소가 서울 구치소 또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허위기재임이 밝혀졌습니다.

① 위 박재명은 “저희들은 주로 정보부 6국 2층, 3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6국 건물에는 조사실이 없고 전부 사무실이었으며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② 위 신흥수 역시 “정보부 6국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일이 일

“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서울구치소 및 서울 중부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 간 기억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중부서는 1974년 이전에 친구를 만나러 한 번 간 일은 있으나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조사하러 서울에 왔을 때는 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오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상기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신흥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 윤종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경찰들이 다 조사한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보부 사람들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기록에 이름을 남기기를 조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소를 변경한 것은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③ 위 손중덕은 이에 대하여 “저희가 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정보부에서 조사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조사 장소는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여 조서가 일괄 조작되었음을 인정하였고,

④ 당시 수사관이었던 전재팔, 임찬욱 역시 조서작성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중부서 등의 위치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수사를 지휘하였던 위 윤종원조차 “6국에 있는 저희 수사팀 사무실과 주변의 빈 방에서 조사를 주로 했고, 서울구치소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 중부서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헛수는 극히 적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조서가 조작되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나) 수사 일시의 허위기재

심문 장소 뿐 아니라 심문 일시 역시 조작되었던바,

① 위 이덕삼은 “하루에 4명의 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 역시 중정의 지시에 의해서 두서없이 조사를 하다보니 결국 하루에 4명이나 조사한 것처럼 날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② 위 신흥수도 “일자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1974. 5. 24. 정만진에 대한 진술조서에 1970. 9. 정만진이 하재완에게 포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음날인 1974. 5. 25. 위 이덕삼이 작성한 정만진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1972. 4.에 포섭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1974. 6. 2. 새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1970. 9.로 포섭일이 바뀌었다는 정만진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조서들이 사건조작의 수위에 따라서 허위의 일시에 작성된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다) 신문 내용의 허위기재

장소나 일시 뿐만 아니라 심문내용 또한 조작된 것인바,

① 위 손중덕은 피고인 이수병이 73. 12.중순경부터 74. 4. 10.까지 매일 05:00-06:30까지 북한방송을 청취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들인 자로서, 피고인 이수병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시간이 06:30이어서 위 방송을 청취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에는 시간대를 특정한 수사관의 실수 때문에 그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수병의 변소내용이 맞을 수 있다고 시인하였고,

② 검찰서기였던 김태근은 “검찰조서에 기록된 답변은 피의자가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규명 검사가 ‘비밀지하당을 결성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한 것이 맞죠?’ 라고 피의자에게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이규명 검사가 저에게 조서에 적을 내용을 불러주어서 저는 그것을 토대로 문답식 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심문내용을 미리 정한 내용대로 검사와 검찰서기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검찰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된 점

이 사건 수사는 중앙정보부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정보부 6국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위 윤종원은 문호철 검사와 이규명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초기부터 중앙정보부에 파견을 와서 상주하였고, 검찰관들은 중앙정보부의 3층인가 4층에 있는 방에서 조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검찰관이었던 이원무 또한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 및 경찰수사관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입회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입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당시 경북도경 파견경찰이었던 박재명, 손중덕은 검사가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곳에 들어가 본 일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 나갑열은 이렇게 검찰관과 같이 조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관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검찰관인 이원무는 “제가 검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정에서 제공한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관은 한마디로 바지저고리여서 권한이 없었습니다. 증정에서 만들어온 피의자신문조서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조서를 꾸며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내가 검찰관으로서 들은 사실은 증정에서 받은 대로 조서를 받아내라는 것이었고...증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맞춰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의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전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위 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던바, 이 또한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① 위 나갑열은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사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증정 6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 손중덕 역시 “당시 관행을 보았을 때 피의자들이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수사하던 저희 경찰들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변호인을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③ 위 윤중원은 이용택 국장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교도관이었던 전병용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이후에도 정보부 직원이 접견장소에 입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④ 당시 변호인이었던 함승현은 “변호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진행된 수명법무사의 심문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소송절차법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심문의 결과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⑤ 변호인 함정호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는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며 위법한 심리태도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5)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사이의 접견기록

원판결의 증거 중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되는 각 진술부분’,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부분’은 당사자들의 자백인데, 위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당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사이의 접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무죄의 입증자료라 할 것인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고인 이수병과 조승각 변호사의 접견기록

문 : 반국가단체, 정부전복 의사는 전혀 없다 해요.

답 : 네 사실이 그렇지요.(74년 8월 13일)

답 : 상고이유서를 상세하게 써주십시오. 1항 같은 것은 혐의가 없는 것은 밝혀주세요.(74년 12월 12일)

(나) 피고인 서도원과 조성기 변호사의 접견기록

문 : 항소이유서 써냈지요?

답 : 예 정부전복, 학생선동, 특히 인혁당을 재건하러했다는 것은 전면 무근한 것입니다.

문 : 4인 지도부를 리드한 것은 어때요?

답 : 이것 역시 터무니없는 사실이에요. 공소장 전부가 사실과 무근한

것입니다.

답 : 하재완의 노트 전연 본일 없어요. 이것도 허위예요

문 : 인혁당에 가담한 일 있어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공소장은 어때요.

답 : 공소장 6,11,16,21,22,23,23항 이외에는 전부 다 사실과 다른 것
입니다(74년 8월 22일)

(다) 피고인 송상진과 조성기 변호사의 접견기록

문 : 인민혁명당에는?

답 : 가입한 일 없습니다.

문 : 기소장 7항을 읽어주다

답 : 자술서를 증정에서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러한 것입니다.

문 : 8항을 읽어주다

답 : 전연 없습니다. 여정남이도 본건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인혁당 재
건 자체가 모험적인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 피고인 우홍선과 김종길 변호사의 접견기록

문 : 몸은 괜찮으신지요?

답 : 몸은 정보부에서 조사 받을 때 매를 맞아 허리가 아프며 하지부정
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 : 구속된 경위는

답 : 4.26경 이수병을 만났다하여 조사 받았으나 내용이 다르다고 서
명날인을 하지 않는다하여 강제로 서명시키고 날인케 한바 있습
니다. 작년 이수병, 전창일 등 4명이 만났었는데 누구 아느냐하
고 안다면 내용은 각본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검사조서도 정보
부에서 몽둥이찜질을 해가며 작성했기 때문에 임의진술 아닌 강
제진술인데 증거가 안 된다고 좀 어렵겠지요.

문 : 증인이 없으니 어렵겠지요.

답 : 처음엔 간첩으로 몰려고 하기에 이북에 몇 번 갔다 왔다고 하니
아르바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5월6일에야 수사관이 부른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군법회의고 해서 어렵겠지요, 긴급
조치가 해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렵겠지요.

문 : 자술서를 몇 번이나 썼는가요.

답 : 진술서는 여러 번 썼고, 인혁당 재건위원회라는 진술서는 5월말에
작성했으며 검사조서를 두 번 받았으나 첫 번 검사조사 시는 저
의 뜻이 반영되는 듯 했으나 두 번째는 문답 문답씩으로 일방적
으로 썼으며 서명은 강제로 제 손을 붙잡고 쓴 흔적이 있습니다.
각본대로 했습니다. 긴급조치 4호는 불고지이지요.(74년 6월 10
일)

(마) 피고인 김용원과 윤의준 변호사의 접견기록

문 : 뭐 내일 공판시 변호인이 물어볼 사항 있어요

답 : 1.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과 관련된 것을 자세히 물어주세요. 2.
인혁당 지도부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세요. 3. 정보부에서는 고문
에 의해 한 것이예요.

문 : 판 것 이야기 있어.

답 : 기소이후에 정보부에서 진술서를 첨부했는데 전부 조작한 것이예
요. 하재완 집에서 만나본 후 그 이후는 만난 사실 없어요. 하여
튼 조서는 거의 다 정보부에서 조작한 거예요

문 : 3.18.날 하재완 만났어요?

답 :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3.7. 유인태 만났어요? 3. 7일에

답 : 3.7. 유인태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바) 피고인 도예종과 황계룡 변호사의 접견기록

문 : 1심 때 못한 말 2심에서는 다 말하세요. 2심이 중요하니 하고 싶
은 이야기 다 하세요.

답 : 검사조서 작성 시에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항소이유서에 했습니
다.

문 : 뭐 판 말 있어요.

답 : 1심공판전에 증정에서 불러갔더니 공소장 대고 전부 시인하라 안
하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판결의 공소의 기초된 수
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이 행하여 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인바, 고문이 행하여 졌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1) 수사관들의 진술

위 위원회의 조사결과 중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 ① 위 전재팔은 “물고문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전기고문을 하는 것만 봤습니다.” 라고 하여 고문사실을 시인하였고,
- ② 위 이덕삼은 “제가 알기로는 정보부에서 윤계장과 박수사관, 김사무관 등 고문을 하는 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에서 고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고문사실을 시인하면서 “초기에는 하재완, 여정남 등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정남은 중정의 윤종원 계장과 박수사관 등의 수사팀에게 몽둥이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③ 위 신홍수는 “아마도 윤종원 팀장의 부하들이 고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피의자심문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피의자들이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정 사람들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하는 등 따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④ 위 김강진은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 증거도 없고 피의자들이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조사하는 데에도 며칠씩 걸렸다’ 고 하면서도 1974. 5. 20. 하루 동안 무려 6명의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관이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기초하여 혐의사실을 물으면 피의자들이 모두 ‘예’ 라고 시인을 하여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을 심하게 당해서 두려움에 젖어 있어서 무거운 혐의사실도 쉽사리 시인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고문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송상진은 1회 피의자심문조서에서는 중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가 2회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는 매우 중대한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이는 피고인 송상진이 1회 피의자심문을 받은 다음 2회 피의자심문을 받기 이전에 고문을 당해 중앙정보부의 강요대로 자백하

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교도관들의 진술

- ① 서울구치소 교도관이었던 이정희는 “하재완이 저에게 탈장이 되어서 불알과 창자가 빠져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하재완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였고 아랫배가 불룩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온몸이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아서 탈장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② 교도관 전병용은 “유진곤은 손과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김용원도 맥이 풀려 있었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서 탈장이 되어 있었고 물고문에 의한 폐농양증으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수병은 저와 대화 과정에서 고문을 받아서 목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들 대부분이 구타로 인한 피멍자국이 여기 저기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을 붙잡고 몸을 뒤척이곤 하였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재소자들 역시 업혀서 들어오거나 부축을 받으면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 ③ 교도관 이택모는 “하재완은 저에게 되게 고문을 받아서 탈장이 되었다. 전기고문을 받아서 경련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예종과 송상진은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간첩질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평소에 같이 산행을 갔고, 몇 차례 이북 방송을 듣기만 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심하게 고문을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자백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④ 교도관 김상규는 “출정 나갈 때나 복귀할 때 소제들에게 얹히거나 부축을 받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병으로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몽둥이로 맞아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교도관들의 진술은 중립적인 당사자로서의 진술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3) 변호인 및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 ① 변호인 함승현은 “(여정남은) 중정에서 고문에 의해 강제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② 변호인 박승서는 “검찰관들은 공판정에서 시종 검찰피의자 심문조서 내용의 확인에 진력하였는바, 변호인 반대심문에서는 검찰관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③ 변호인 함정호는 “검사가 심문을 할 때 혐의를 부인하면 정보부에 되돌려 보내서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 ④ 김영일(필명 김지하)은 “제가 하재완에게 인혁당 사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하재완이 저에게 인혁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정보부에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문 때문에 장이 파열되었습니다.” 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고문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재심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판결은 재심사유가 뚜렷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재심 개시 결정 및 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2002. 12.

청구인들의 변호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지>

변호인단 명단

1. 변호사 유현석
2. 변호사 한승현
3. 변호사 최영도
4. 변호사 조준희
5. 변호사 안영도
6.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이돈명,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박서진, 진선미, 여치현, 이정희, 김재영, 윤영화, 강지현, 위대영)
7.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 신용락, 장재호, 이유정, 남성렬, 원민경, 장경수)
8. 변호사 이석범
9.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 박승진, 최욱, 박성하)
10.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 김태선)
11. 변호사 강신욱
12. 변호사 김지연
13. 변호사 송영숙
14. 변호사 황학수
15. 변호사 허윤정
16. 변호사 최준기
17. 변호사 최윤상
18. 변호사 이영준

19. 변호사 안창삼
20. 변호사 남승한
21.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 김호철, 정영원, 조숙현, 조영선)
22. 법무법인 총정 (담당변호사 : 김주원)
23.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덕우)
24. 변호사 박형상
25. 변호사 유중원
26.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김승교)
27.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 백승현, 조광희, 정연순, 이상희, 전성우, 이지선)
28. 변호사 박민재
29. 변호사 김선수
30. 변호사 김진
31. 변호사 장경욱
32.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강금실)
33.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임종인, 김수정)
34.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 이원영)
35. 변호사 김인회
36.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 한택근, 김석연)
37. 변호사 이찬진
38. 변호사 김기중
39. 변호사 김갑배
40. 변호사 최영동
41.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장유식)

직권 84호 장석구 사건 중간 발표문

1. 조사진행 경과

- 1) 조사개시(직권결정)일 : 2001. 3. 17.
- 2) 조사기간 연장
 - 1차 조사기간 연장 2001. 9. 17.
 - 2차 조사기간 연장 2001. 12. 17.
 - 3차 조사기간 연장 2001. 3. 17.
- 3) 조사완료 예정일 : 2002. 9. 17

2. 사건의 개요

1974. 4. 3 유신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고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대거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 18일 무렵부터 인민혁명당 재건단체 관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인민혁명당 재건단체 관련자들은 사형수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여정남, 무기수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유진곤, 강창덕, 라경일, 이태환, 전재권, 유기수 (15년, 20년)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조만호, 이재형, 임구호, 정만진이다. 이들에 대한 검거는 1974년 5월 초순 경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끝까지 피신했다가 이후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되어 옥사한 이재문(범죄내용으로 볼 때 사형 대상)과 이성재만 연행이 되지 않고 피신했 있었다. 이성재는 여러 친구(현재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김자동 등)들 집을 전전궁궁하다가 1974년 6월 14일 밤에 장석구의 집에 피신하러 왔고 장석구는 이성재를 하룻밤 재운 다음에 다음 날 이성재의 고모가 운영하는 여관으로 이성재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중정 직원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이성재도 그 날 바로 연행이 되었다. 장석구는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75년 7월 22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1975년 10월 15일 옥사를 하였다.

3. 직권조사의 필요성

- 1) 직권조사 여부 검토사건 참조

2) 인혁당 관련자들의 의혹 사항

- 장석구는 혁신계 언론인 민족일보 기자를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인혁당 관련자들 중에서 비슷한 연배의 혁신계 사람들과 잘 알고 있었고, 인혁당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구속되었으며, 인혁당 관련자들과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음.
- 강창덕과 전창일은 다른 인혁당 관계자들은 모두 15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나 장석구는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석방 이후 실상을 폭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정과 구치소에서 공작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
- 강창덕과 전창일에 의하면 김지하도 인혁당 사건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자 바로 구속이 되었고 전주교도소에서는 남파 간첩, 장기수보다 인혁당 관련자들을 더 엄중감시하였다고 함. 그리고 전창일의 경우 '엄중 독거, 완전 격리' 라고 지시한 법무부 공문을 교무과에서 직접 보았다고 함.

4. 조사의 계획

1) 조사의 목표

- ① 장석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침해로 사망했음을 밝혀냄
- ② 인혁당 사건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유신정부(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을 밝혀냄

2) 조사의 범주

- ① 유족과 관련자 : 대부분 마무리
- ② 서울구치소
- ③ 중앙정보부
- ④ 군법회의와 대법원 : 공판조서 조작 1차 집중
- ⑤ 기타 관계자(74년 참고인, 구명운동 관계자)

※ 자세한 사항은 기획안 참조

5. 조사현황

1) 관련기록 확보

① 군법회의소송기록

- 장석구 및 인혁당 피고인(24명)의 사건 기록 : 의견서, 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공판조서, 사법경찰관 및 검찰관 심문조서, 자필 진술서, 비상보통(고등)군법회의, 대법원 판결문
- 74년 민청학련 사건 기록 : 의견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공판조서, 비상보통(고등)군법회의, 대법원 판결문
- 김배영 간첩사건 판결문
- 일본인 사건 판결문

② 수형자 신분장

- 서울구치소 : 장석구, 도예종 외 7명의 사형수
- 장석구 병력표, 건강진단부, 거실지정 없음
- 정부기록보존소 : 정만진, 이태환, 이재형, 임구호, 전재권, 황현승, 이성재, 조만호

③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및 사진

- 박재명 외 23명(대구청, 경북청 제출)
- 라갑열(서울청 제출)

④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장 자료

- 인혁당 재건위 재심사건 법률검토, 임구호 재심청구 자료, 인혁당 재심청구 자료, 강순희의 호소문 1, 2, 중앙정보부 6국에서의 48시간, 변호사 확인서, 오글목사 앞 편지, 임인영 글, 김진생 외 3명 탄원서, 이영교 탄원서, 신동숙 탄원서, 신동숙의 오글목사 앞 편지, 도예종 1차 인혁당 사건 항소이유서, 강신옥 상고이유서, 도예종 영남일보 글
- 영문(번역) : 상원의원 앞 오글목사 글, 불안한 상황(시노트 신부 글), 조지오 피셔 주니어 글, 뉴욕타임스와 뉴 아시아 뉴스 기사, 코리아 뉴스

⑤ 중앙정보부 관련 자료

- 6국장 이용택, 수사관 박해철 인적사항

○ 장석구외 24명의 의견서(장석구 : 서울시경, 23명 : 중앙정보부)

2) 관련기록 의뢰

① 군법회의소송기록

○ 박중기, 김금수, 김달호 사건 기록

- 사건 관련자로 구속 조사(1974. 4. ~ 6.)

- 국방부 검찰단 사건과장 회신 내용 : 상기 3명은 사건기록부에 미등재

② 수형자 신분장

○ 대구교도소 의뢰 : 유진곤, 강창덕, 김한덕, 전창일, 김종대, 이창복 (6명)

○ 전주교도소 의뢰 : 라경일

- 회신내용 :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

③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및 사진

○ 대구청, 경북청 의뢰 : 심경진, 전재팔, 홍순철, 라화용

- 회신내용 : 확인 불가

○ 서울청 의뢰 : 총경 김계상, 경위 이천재, 경위 박승구

- 확인중

④ 중앙정보부 관련 자료

○ 6국 직제표와 건물 도면

- 회신내용 : 직제표는 없으며, 건물 도면은 서울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

○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유진곤, 조만호, 이성재, 장석구(총 24명)의 동향보고 자료와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기록

- 회신내용 : 장석구 사건은 중정에서 조사하지 않았음.

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자료

○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전창일, 김종대, 이창복, 나경일, 전재권, 강창덕, 이태환,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유진곤, 장석

구, 정재룡(총 18명)

- 2차 신청서 심의가 각 시, 도청에서 끝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함.

⑥ 대법관 인사기록카드

○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창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⑦ 비상군법회의 관계자 인사기록카드

○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보관활용과 의뢰

○ 보통군법회의 : 박현식, 류병현, 박희동, 이희성, 강신탕, 신현수(이상 장군), 권종근, 신정철, 박천식(이상 판사), 김진석, 송병철, 김태원(이상 검사), 신복현, 황종태, 김영범(이상 무궁화 법무사), 조규철, 김권욱(이상 상사 서기)

○ 고등군법회의 :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이상 장군), 문영극, 박정근(이상 판사), 정태균(이상 검사), 이진우(이상 무궁화 법무사), 김호영(이상 서기)

○ 검찰부 : 이근일, 전세봉, 이원무, 강철신, 정상용, 이인수, 백광현, 조태형, 문호철, 이규명, 송종의(이상 검찰관), 이상대, 김강진, 김태근, 이석순, 김봉수, 정일균, 승원재(이상 서기)

○ 변호인(법무관) : 안동일(소령)

⑧ 중앙정보부사

○ 대전 정보기록보존소 의뢰

- 회신내용 : 없음

⑨ 서울구치소 교도관, 의무관 인사기록카드

○ 서울구치소 서무과 의뢰

- 회신내용 : 당시 직제표가 없으며 인사기록카드 양이 많아서 위원회에서 직접 와서 찾기를 희망함.

3) 참고인 조사 : 2002. 4. 20. 현재 총 23명 38회

- 김진생(송상진의 처), 이영교(하재완의 처), 신동숙(도예중의 처), 배수자(서도원의 처), 추국향(정만진의 처), 정점매(전재권의 처),

구두선(이태환의 처)

6. 중간 조사 결과

- 현재까지 유족들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장석구 및 인혁당 관련자들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인혁당 사건의 조사 내용, 방법, 주체, 장소, 일시, 공판조서 변경 내용, 관련 수사관, 검찰관, 교도관에 대한 정보, 가족에 대한 피해사례(인권침해 사례 포함) 조사
- 교도관 2명 조사

1) 장석구의 민주화 운동 경력

- 1960년 이전 대구일보, 영남일보 기자
- 1961. 민족일보 정치부 기자
- 1961년 대구에서 민자통 관계 구속
- 1964. 한일(대일)굴욕외교반대 전국공동투쟁위원회 중앙간부
- 1964년 이후 한시적 국민운동체에서 계속 활동, 3선개헌반대운동 참가
- 1960년대 자강학회에서 전창일과 같이 운영위원으로 실무 활동, 1970년 이후 실무는 그만둠.
- 1960년~1970년대 요시찰
- 1970년 남북공예사 사업 주력
- 1970년대 장준하 유신반대 활동 지원

2) 1960년대 혁신계 및 1970년대 민주화 운동

- 민민청 :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정만진, 박중기, 김금수
- 통민청 : 우홍선, 이재형, 이재문, 전재권
- 사회당 : 강창덕, 전재권
- 사회대중당 : 이성재, 김한덕
- 학생민통련 : 이수병, 김용원
- 민족자주통일협의회 : 상가 14명(김용원 제외), 이태환, 김달수
- 정사회 : 여정남, 임구호, 이재형
- 노동조합협의회 및 노동조합연맹 : 라경일
- 남조선해방전략당 : 라경일
-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정만진, 이재문, 전재권, 강창덕, 전재권, 라경일, 여정남, 임구호

- 경락연구회 : 서도원, 우홍선, 이수병
- 1차 인혁당 : 도예중, 우홍선, 이재문, 정만진, 송상진, 박중기, 김금수
- 경력 무 : 김종대, 유진곤, 이창복, 황현승

※ 부산지역 고교 씨클 암장 : 이수병, 김종대, 유진곤, 김금수, 박중기

3) 민족일보 사건

- 민족일보는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노선을 주장하였으며 2대 악법 제정에 반대하였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 혁신계열 신문
- 민족일보는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려는 신문. 조용수는 이형근에게 조총련 계열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나 이형근은 노태우 정권 당시 국가 훈장을 받은 사람이므로 사건의 조작에 대한 증거

4) 피의자들의 시대인식

- 장석구를 비롯하여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굴욕적 대일외교, 월남 파병, 삼선개헌,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자주평화통일을 염원하였음.
- 하재완, 송상진 등 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좋아했으며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대단히 좋아했음.

5) 장석구 관련 정황

- 신분장에 의하면 장석구는 1975년 1월부터 5월에 병사에 들어갔으며, 사망하기 전인 1975년 10월 14일에 입병사하여서 10월 15일에 퇴사하여 형집행정지로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짐.
- 1975년 10월 초(추석 이후)에 장석구의 미망인 고혜경이 면회를 할 때 장석구는 몸이 뼈쩍 마르고 얼굴에 하얀 버짐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하며, 1975년 10월 15일 적십자 병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으며 산소마스크를 때자 바로 사망했다고 함.
- 아직 사망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정확한 사인은 모르나 고혜경의 진술과 신분장 내용에는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함. 그러

나 고혜경의 진술에 의하면 장석구는 혈압이 조금 높기는 하였으나 검거되기 전까지는 잔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함.

○ 장석구에 대한 고문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고혜경도 장석구로부터 직접 고문 사실을 듣지는 못했음).

6) 주요 조사 내용

○ 당시 조서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보면 1974년 5월 27일 공소장이 발부될 무렵부터 수사의 내용이 급변함. 5월 24, 25일부터 시작된 경찰조서와 6월초부터 11일까지의 검찰조서를 보면 이전에 등장하지 않던 인혁당 재건단체, 공산비밀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임구호, 이재형, 전창일, 김한덕 등이 이때부터 경북지도부, 인혁당 재건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조서에는 이전까지는 김달수, 박중기가 73년 11월에 같이 회합을 했다고 하다가 이 무렵부터는 김달수, 박중기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라경일은 자신과 하재완, 송상진의 조사 내용이 이 무렵부터 갑자기 변했다고 진술함.

○ 인간관계, 하재완 녹취 노트, 서울 지도부, 경북 지도부, 인혁당, 7인 회합, 조편성, 자금, 지도위원 추대 등의 내용이 집중 조사됨.

○ 73년 11월 김달수, 박중기를 포함한 7인 회합, 조편성(황현승), 치솔령 회합, 이수병이 사회주의 공부 제안, 학생데모 자금 지원, 이수병으로부터 민청학련 선언문 받음, 노트 목격, 7인 회합 및 조편성(김종대), 김용원을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조편성, 인혁당 재건위 서울시 지도부, 조선노동당 5차 전당대회 보고문 내용을 들은 일이 있음, 김용원이 민청학련에 관계하고 있음(이창복), 김배영 귀국 불가 지시를 했으며 통일촉진회, 인혁당 재건단체 가입, 인혁당 서울시책(김한덕), 정예근, 문한영, 이종린을 포섭하려다 실패하였고 서도원, 도예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 4(5)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인혁당 재건단체 가입, 우홍선 북한방송 청취(전창일), 라경일, 강창덕, 이재문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를 전복하려 함, 상기 세 명이 지하신문을 만들고 언론, 노동, 정치, 학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신반대운동을 확산시켜려고 했던 내용(강창덕, 라경일), 하재완의 집에서 조만호의 소개로 하재완이 녹취한 노트를 탐독, 하재완이 직접 노트를 보여주었음,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

비밀조직인 경북지도부 가입(이재형), 학생운동 경력, 하재완이 녹취한 노트 탐독, 인혁당 경북지도부 가입, 정화영에게서 민청학련 이야기를 듣고 격려(임구호), 이수병 자금지원, 서울시당 조직책, 삼락학원, 경락연구소 등에 간 이유, 이성재, 전창일, 김용원 등과의 관계, 마지막에 '본 단체 가입' (박중기)

※ 조사내용 중 사실

- 하재완 : 북한방송 청취와 노트 작성
- 송상진 : 북한방송 청취와 노트 작성
- 서도원 : 북한방송 청취와 하재완의 노트 이수병에게 전달
- 이재형 : 조만호의 소개로 하재완의 노트 탐독
- 강창덕 : 지하신문 제작과 이재문, 라경일과 같이 언론, 정당, 학원, 노동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신반대운동 확산 기도
- 라경일 : 상동
- 황현승 : 민청학련 유인물 탐독
- 이창복 : 민청학련 유인물 탐독

※ 조사내용 중 (주요)조작

- 공산비밀지조직 구성(전원)
- 인혁당 재건단체, 서울지도부, 경북지도부 구성 및 가입(거명자 전원)
- 하재완이 작성한 노트 내용 피전달(이창복)
- 하재완이 작성한 노트 탐독(임구호)
- 조편성(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 서도원과 도예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전창일)
- 도예종에게 김배영 귀국 불가 지시를 받고 김배영 동생에게 전달(김한덕)
- 복덕방에서 나진오, 최중태, 이종규와 모여서 유신비방(정만진)
- 정화영에게 민청학련 관련 이야기를 듣고 74.3.21 경북대 데모를 성사시켜서 정부를 전복하라고 격려(임구호)

7) 고문 및 가혹행위 내용

- 황현승 :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 김종대 : 구타, 물고문

- 김한덕 :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 이창복 : 구타
- 전창일 :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 장석구 : 연행 과정 구타
- 이재형 : 구타, 물고문
- 임구호 : 구타
- 강창덕 : 구타, 물고문(대구남부서)
- 라경일 : 구타, 물고문(대구남부서)
- 박중기 : 구타, 전기고문
- 이외에 사형자들과 출소 이후 사망자들 모두가 잠안재우기, 구타 이상의 고문(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정만진, 하재완, 이태환, 서도원, 도예종의 미망인과 생존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

8) 수사관

- 황현승 : 박재명(전기고문), 노량진서 파견 경찰, 박재명이 조사가 끝날 무렵에 자기도 황현승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이창복 : 서울 출신으로 생각되는 사람
- 김종대 : 윤계장(몽둥이 고문) □ 손중덕(고문) □ 박재명(고문 협박) □ 40살이 넘는 뚱뚱한 사람, 손중덕이 “이수병이를 공산주의자로 만 들지” 라고 이야기, 호위하던 육군대위와 윤계장이 북한 방송 같이 들음, 이재형이 손중덕의 아버지가 교회장로라고 함
- 김한덕 : 윤계장(전기고문) □ 예쁘장하게 생긴 40대 담당 수사관(전기고문) □ 50여살의 고참 수사관(몽둥이 고문), 윤계장이 고문을 하다가 치사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치지 않으며 유신체제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마음대로 써줄 수 있다고 말함, 수사관이 여기서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함, 윤계장이 “미안하지만 성불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함
- 전창일 : 2~3명씩 구성된 팀이 2차례 바뀜. 조사 마지막에 수사관이 “자기도 이 내용 하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상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정예근, 이종인, 문한영을 포섭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타협을 하자”, 수사관이 “다른 사람들이 다 서도원, 도예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신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사표를 내야 한다”, 성북서 수사과에 근무 수사관(라갑열) “군법회의니까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갖추므로 끝까지 정신차리고 버티라”, “나는 중앙정보부에 와서 보니 정말 놀랐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못한다”, 세 번째 팀은 복사를 하듯이 자기가 들고 있는 글과 똑같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윤계장이 구치소로 와서 극동건설 회장 김용산이 로비를 해서 극형을 면하게 해줬다고 함.

- 강창덕 : 북대구서 출신 이경사(이덕삼으로 확인), 사무실에 있었던 수사관들이 “이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하나? 혁신정당 지하조직으로 붙여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혁당 재건 사건으로 하면 되겠다.” 고 정리하는 것을 들음
- 라경일 : 임찬욱(다른 수사관 한 명과 번갈아 가면서 몽둥이 고문), 손중덕(확실하게 기억 못함)
- 이재형 : 기억 못함.
- 임구호 : 이덕삼, 손중덕(전기고문 의자에 앉히고 상황 설명, 이현세는 침대몽 여섯 개를 부러뜨렸고, 이강철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했다고 임구호에게 말함.), 윤계장, 머리가 벗겨진 간부(윤계장 상급),
- 박중기 : 손중덕, 박재명(전기고문), 최씨 성의 사람(유자코, 서울 말씨), 30대 후반의 해병대 출신의 중정 직원(위로)

9) 검찰관

- 황현승 : 서울대 동문
- 김종대 : 이규명, 이규명이 중정에서 정강이를 세계 걷어차서 다리에 피가 남
- 이창복 : 이규명, 국방부에서 1차 선고공판 전에 이규명 검사에게 구둑발로 채이면서 노트와 관련된 자술서 작성
- 김한덕 : 이규명
- 전창일 : 이규명, 구치소로 와서 변호사를 군법무관으로 바꾸라고 함
- 하재완 : 문호철이 군법회의에서 “너 덜 맞아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 더 때려 주지. 각오해” 라고 말함(이영교)
- 강창덕 : 공군법무관

- 라경일 : 30대 중반의 사복
- 이재형 : 이씨 성을 쓰는 30대 중반의 사람
- 임구호 : 1회 문씨(정상용으로 추측), 다음부터는 전세봉(뺨을 때리고 발로도 걷어참), 법정에서 이규명, 문호철, 군 검찰관들에게 집단 구타 당함

10) 공판조서 조작

- 검찰관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조작되어 있음.
- 사형수와 무기수들을 중심으로 인혁당 재건단체, 서울지도부, 경북지도부에 대한 내용이 조작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공판조서가 공판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음. 대부분의 유족과 관련자들은 검찰관 심리는 개별 심리로 진행하였고 1인당 할당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며(신동숙은 1인당 3분에서 5분으로 기억), 검찰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은 모두 단답형의 짧은 문장이었다고 함. 그러나 공판조서는 장문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 배수자는 서도원에 대한 (공판조서에 기록된) 검찰관 심리 내용 중에서 2/3 이상이 문답 자체가 없었다고 함.

11) 피해상황

- 당사자의 사망 : 사형수 8명, 정만진(심장마비), 이태환(뇌경색), 전재권(간과 심장의 장애)
- 당사자들의 고문 후유증 : 박중기(한쪽 눈 실명) 등
- 경제적 피해(장석구와 인혁당 가족 전원)
- 가족들에 대한 요시찰과 이로 인한 사생활의 소실(장석구와 인혁당 가족 전원)
- 간첩 가족으로 몰림(하재완 가족이 가장 심함)
- 자식 교육에 영향
- 중정 조사(아래 서술)
- 남민전 사건 당시 경찰에게 연행, 조사(아래 서술)

12) 가족들에 대한 조사

- 1975년 1월 15일 서도원, 도예중, 이수병, 하재완, 송상진, 우홍

선, 김용원(이상 사형수), 전창일의 부인이 중정에 연행되어서 각서를 쓸 것을 강요받음. 주된 내용은 남편은 공산주의자이며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남편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은 대부분 서명하지 않았음. 김용원의 부인은 유승옥은 조사 과정에서 흥분제를 먹고 이후에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함.

- 남민전 사건 당시에 사형수들의 내복으로 남민전 깃발을 만들었다고 사형수들의 부인과 전창일, 이성재의 부인들이 조사받음. 조사 내용은 언제 누가 내복을 모아서 누구에게 주었는지임. 대구에서는 사형수들의 처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부인들도 연행이 되어서 석방운동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옴. 대구에서는 원대동 소재 경북도경 공안분실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부인들 모두에게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음. 대구에서는 서도원의 처 배수자가 내복을 모아서 주었다고 결론이 났으나 서울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서 하재완의 처 이영교가 대구의 내복을 모아서 이성재의 처에게 준 것으로 결론이 났음. 이 과정에서 이영교, 도예중의 부인 신동숙은 서울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음.

13) 조사장소

- 중앙정보부 : 전원이 중정에서 경찰조사, 검찰관 조사를 받음.
- 서울구치소 : 임구호의 경우 한 번 구치소에서 검찰관 조사를 받음
- 용산 국방부 : 라경일, 하재완, 송상진이 5월말, 6월초 무렵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내용이 급변했다고 함(비밀조직을 만들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등).

14) 수감 장소

① 진술

- 이창복 : 4상16호, 이후 경제사범 사방에 혼거
- 황현승 : 10하31호
- 김종대 : 1상7호
- 장석구(고혜경) : 4하 또는 5하(면회 당시)
- 전창일 : 9, 12, 10, 9 상층 순서로 전방
- 김한덕 : 4하12호, 서도원도 4사로 기억
- 이창복 : 4상16호, 김용원은 4하21, 김효순은 김용원옆방으로 기억

- 이재형 : 9상층으로 기억, 조만호가 9상층에 있었음.
- 임구호 : 9하층이며 호수는 부정확하나 5호로 기억
- 강창덕 : 하층 5호실이며 3동 아니면 5동으로 기억, 송상진은 8호 실로 기억
- 라경일 : 5하, 김용원은 하층, 장석구, 이수병은 상층
- 박중기 : 3하5

② 군법회의 자료

- 이수병 : 5상1
- 도예중 : 3상21, 1상3(4.25 이후)
- 우홍선 : 1하22(5.2), 4상12(11.23 무렵)
- 서도원 : 4하5(4.25), 9하6(11.23 무렵)
- 여정남 : 9하24(4.24), 3상4(7.25 무렵), 3상2(11.23 무렵)
- 김용원 : 3상14(4.20), 5하12(7.25 무렵), 5하10(11.23 무렵)
- 하재완 : 1하18(5.1), 4상13(9. 무렵), 1하5(11.23 무렵)
- 송상진 : 3하1(4.30), 3하8(7.25 무렵), 3하9(11.23 무렵)
- 이재형 : 9상33(5.1), 9상37(6.18, 7.25 무렵) - 변호사 접견 없음
- 전재권 : 9하30(5.1)
- 정만진 : 4상23(4.30) - 변호사 접견 없음
- 임구호 : 9하19(5.1), 9하20(7.25)
- 이태환 : 10상26(5.1), 10상31(7.25)
- 조만호 : 9상31(5.1)
- 이성재 : 2상15(6.15), 2상6(6.26), 9하32(8.21), 9하9(75.11.4)
- 황현승 : 10하32(5.)

15) 교도관 및 재소자

- 김종대 : 교도관이 위로, 소제가 고문사실 확인
- 고혜경 : 돈암동 식당 주인, 자동차 절도범, 장석구를 업고 다녔던 일반수가 집에 찾아온 사실이 있음
- 김한덕 : 키가 큰 전교도관(인천 간관업)이 고문사실확인, 조교도관
- 전창일 : 조사를 받을 때 12동 상층에서 일반수들과 혼거(일반수가 마사지를 해줬음), 변호인 접견 당시에 중정 직원 입회(소제가 알려 줌)
- 하재완 : 석방하는 일반수를 시켜서 가족에게 "정책적 사건이므로

절대로 돈을 쓰지 말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고 함

- 라경일 : 전병용, 5사 하층 담당하면서 고문받고 사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
- 이재형 : 기억 못함, 자신을 부축해 주었다고 함.
- 임구호 : 두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기억 못함.
- 박중기 : 전병용, 조창호

16) 시신의 상태

- 장석구 : 염을 할 때 보니 몸에 시퍼런 것이 있었음(고혜경)
- 여정남 : 얼굴과 손에 붕대가 감겨 있고 손에는 피 자국이 있었음(여규정)
- 송상진 : 얼굴만 목격했으나 특이 사항 없음(김진생)
- 하재완 : 화장한 다음에 검은 뼈가 발견되었다고 함(이영교)
- 서도원 : 염을 할 때 보니 등판이 명들은 것처럼 시꺼멓게 되어 있음(배수자)
- 도예중 : 옷을 입은 채로 목격했으며 가족들은 큰 상처가 없다고 함(신동숙)

17) 참고인(피조사자) 관련

- 하재완의 조카 하종언은 조사를 받고 난 뒤 똥이 잘 나오지 않았으며 하종상은 하재완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아직도 신경안정제를 먹는다고 함.
- 대구 정보부에서 나진오, 최종태, 이종규에게 정만진이 동네 복덕방에서 유신을 비방했다는 내용의 조사를 하고, 중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함. 1심에서 최종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검찰 측에서 최종태를 대동하고 현장검증 실시. 최종태는 대구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대인공포증이 생겼으며 지금도 외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며, 이종규는 정만진의 처 추국향에게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하며 흔적을 보여주었고 나진오도 현재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함. 정만진은 복덕방에서 만났다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4월 5일에 최종태는 대구에 없었다고 하며 복덕방은 4월 5일 이전에 폐쇄했었다고 함.

18) 기타

- 황현승 : 예전에 같은 집에 살았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 임치호의 의형이 증정에 찾아옴
- 김종대 : 2심 법무사 대령이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심리와 최후진술을 생략한다고 함, 고문 수사관 5~6명 재판정 주위 배회
- 박중기 : 증정에서 전기고문을 받고 기절한 다음에 의사 진찰을 받음(40대 중반 안경을 쓴 사람)

7. 이후 조사계획

- 서울구치소 조사 기획안 참조
- 보고서팀과 협조하여 유신, 긴급조치의 정치적, 법적 해석 예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 정

사 건 직권 제84호(장석구 사건)
 피진정기관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의문사한 자 장 석 구

생년월일	1927. 9. 19 (사망당시 만 45세)
직업	남북공예사 사장
사망일	1975. 10. 15.

주 문

1. 의문사한 자 장석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의문사한 자 장석구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3.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관하여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이 유

1. 이 사건 직권결정의 취지

(1) 인혁당 사건과 관련자 8인의 사형집행은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극단적인 인권탄압사태라는 주장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시 양심적인 지식인들, 종교인들, 외국 신부, 외국 언론 모두 이 사건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시 재판부의 판결이 재심 등으로 번복된 바도 없다.

(2) 의문사한 자 장석구 (이하 '장성구' 라 한다)의 처 고혜경의 증언에 따르면 장석구는 자신이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망 당시 거의 식물인간이 다된 상태였다.

(3) 위원회는 인혁당 관련자로 옥사한 장석구의 의문사를 조사함으로써 인혁당 사건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장석구의 사망이전의 행적

(1) 1972년 유신선언 이전까지의 행적

(가) 장석구는 1927. 9. 29.에 태어나서 단국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60년까지 한국일보 대구지사, 대구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4. 19. 이후 상경하여 혁신계열 언론사인 민족일보 기사를 하였다. 1961. 5. 16. 이후에는 시국강연을 한 이유로 혁명검찰부에 연행되어서 3~4 개월 가량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다음에 요시찰 대상이 되었다.

(나) 장석구는 석방된 이후에 서울로 와 대구매일신문 서울지사에서 1~2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1964년에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대일굴욕 외교반대운동 전국공동투쟁위원회 중앙본부 간부를 역임하였으며, 1969년에는 삼선개헌반대운동을 하였다. 삼선개헌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자 당수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장준하와 교류를 하게 되었다.

(다) 장석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 무렵까지는 종로 5가에 사무실이 있는 자강학회에서 전창일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실무 간사 역할을 하면서 반일민족자주와 평화통일운동을 하였다. 1970년 무렵부터 가업을 이어받아서 서울 성동구 인창동 소재 나전칠기 공장(남북공예사)을 경영하였으며,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자강학회 운영위원으로 계속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하였고, 장준하의 재야 활동을 지원하였다.

(라) 장석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기수인 이성재, 전창일, 사형수인 우홍선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성재가 운영하는 충무로 소재 경락연구소에 종종 출입하면서 1972년에는 동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았던 박중기와도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2) 1972년 유신선포 이후 이성재가 집으로 찾아오기 이전까지의 행적

(가) 장석구는 유신이 선포된 이후에 집에서 “박정희가 제국주의 명치시대 때 하던 케케묵은 것을 한국에서 또 하려 한다.”, “박정희는 일본 놈들 교육을 충실히 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 거다” 라고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장준하의 유신반대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밖에서 모임을 하고 난 뒤에 유신반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팜플렛을 집에 가져오곤 하였다.

(나) 장석구는 긴급조치 1호에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되고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배자 명단이 나왔을 때 “큰 일났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겠다” 고 걱정을 하면서 “박정희가 식민지 때 친일파가 되어서 마치 일본시대 경찰이 사람잡듯이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다) 긴급조치가 선포된 이후에 장석구에 대한 시찰이 더욱 강화되었다.

(3) 이성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다음에 검거될 때까지의 행적

(가) 1974. 6. 14. 22:00에서 24:00 사이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배자였던 이성재가 장석구의 집으로 찾아와서 하루 밤만 자고 가기를 청하였다. 장석구는 “한 자리에 있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고 하면서 이성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고 고혜경에게 “누가 오나 잘 봐라. 잡히면 절대 안된다” 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 1974. 6. 15.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 장석구가 이성재에게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일하러 가려고 하자 이성재가 장석구의 뒤를 따라나갔다.

(다) 1974. 6. 15. 08:00경부터 14:00경까지 남북공예사에 이성재를 은신시키고, 11:30경 이성재로부터 동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수정여관에 두고온 양복과 색안경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장석구는 13:30경 이성재의 소지품을 가지러 수정여관에 갔다가 여관주인 사위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수사□정보 기관원 두 사람에게 구둣발로 차이고 뺨을 맞으면서 강제 연행되었다.

나.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평가

(가) 장석구는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장석구가 구속된 원인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으로서 긴급조치와 동 조치의 선포의 기초가 된 유신헌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박정희 정권은 1969년에 삼선개헌, 1971년에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제정,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언,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동년 12월 27일에 유신헌법 공포,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선포, 동년 4월 3일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였다.

(나) 박정희는 유신선언을 하여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였으며 헌법기능 수행을 비상국무회의로 대체시켰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제3공화국 헌법에 근거할 때에도 대통령에게 부과되지 않은 권한이므로 유신선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유신선언의 기초가 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은 이미 1994년 6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다) 유신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인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고, 국민투표 역시 비상계엄 하에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법적으로 금지된 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각 조항 역시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1/3 추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국회의 국정감사권 기능 삭제, 징계처분에 의한 대법관 파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간선 선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등 3권 분립을 파괴시

키고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신헌법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이다.

(라) 긴급조치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라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의 요건 역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하여서 사후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유신헌법을 옹호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마)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선포가 되었으나 첫째, 학생데모와 □민청학련□ 구성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법 등 현행법으로 능히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포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둘째, 재판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예단하였으며, 셋째, 4월 3일 이전에 □민청학련□ 범죄에 관여한 사람은 4월 8일까지 출석하여서 고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된다고 하여서 법의 발표일 이전의 행위를 범죄시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치 제4호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것이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인혁당계인 서도원 도예중 등은 경북대생인 여정남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의 반정부학생과 접선하여 이들에게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선동하고 그 방법을 교시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적인 대학생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령을 내렸고 여정남은 이 지령에 따라 인민혁명당 서울지도부인 이수병, 김용원의 비호 하에 이들을 통해 이철, 유인태 등을 접선하고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국적인 폭동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적극 찬동 폭력혁명의 필요성, 필연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격려했고 전국적 조직 확

대, 학생봉기의 민중봉기화를 위한 방법들을 교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사, 재판, 사형집행은 위법한 것이다. 첫째, 조직결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 하재완과 송상진이 작성한 ‘조선노동당 5차 전당대회 보고문’ 노트가 유일한 유죄의 증거이나 이 노트는 반공법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이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가 될 수는 있으나 반국가단체 결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둘째, 중앙정보부에서 경북도경 소속 경찰들이 동 사건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몽둥이 찜질,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하였고 셋째, 수사팀장인 윤중원의 지시가 사실관계와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수사 경찰들은 무조건 지시대로 조서를 받아야 했으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고문을 하여서 강제로 시인하게 하였고 그 결과 증거가 조작되었고 넷째, 피의자심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의 장소가 중앙정보부가 아닌 서울중부서, 서울구치소로 허위 기재되어 있고 1974년 5월 27일 이후에 작성한 인혁당 재건위 결성과 관련한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모두 5월 23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고 다섯째,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서는 허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민청학련은 유인물에 기재하기 위해서 급조된 이름으로 민청학련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5월 27일에 기소를 하기 이전에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결성에 대한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고 여섯째,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부인한 ‘인혁당 재건위 결성’, ‘정부 전복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 ‘민청학련 배후조종’이라는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고 피고인들의 고문 주장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곱째, 검찰 수사시에도 경찰들이 입회하거나 출입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였고 강제로 무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고 여덟째,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는 아무 이유 없이 전체 기각되었으며,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이 고문, 협박 사실을 이야기하여도 재판부에서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고 아홉째,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 구속이 되었으며 열번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봉쇄되었고 열한번째,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들은 재심을 신청할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되었다. 열두번째, 사형집행명령부상 유언이 허위작성되었다. 사형집행명령부에는 “적화통

일” 표현이 들어갔고, 8명 전원이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 김판근은 도예종이 “통일을 못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 마디만 진술했고 김판근, 이정희, 안종률, 김용표는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다. 열세번째, 송상진의 사체는 가족에게 인계된 다음에 강제로 탈취되었고, 나머지 7명의 사체 중에서도 일부는 강제로 대구로 송환되었다.

(3) 장석구에 대한 고문 수사

장석구에 대한 조사는 중앙정보부 6국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정보부 6국에서는 피의자를 고문하여서 강제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관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석구 역시 이성재가 인혁당 재건위의 구성원이라는 자백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인태는 서울구치소에서 장석구를 보고 동인이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느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외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중증의 고혈압 환자가 된 것도 고문수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장석구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장석구가 고문을 어느정도, 어떤 방법으로 당했는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4) 고혈압 발병과 서울구치소 의무과 치료

(가) 장석구는 검거 이전에 혈압이 약간 높았으나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혈압문제로 병원에 간 일이 없는 등 치료를 받지 않는 아니하였다.

(나) 신분장에 따르면 장석구는 197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증의 고혈압으로 인해 입병사 처리되었다. 그리고 장석구는 퇴병사하였을 때에도 고혈압으로 서울구치소 의무과 치료를 받고 계속 약을 먹었다.

(다) 장석구는 5개월 동안 고혈압으로 입병사를 할 정도의 중환자였고 1975년 추석 이후 장석구의 처 고혜경이 면회를 할 때 이미 신체적으로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무관이던 박문원에 의하면 동구치소에는 심장이나 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혈압 측정과 혈압 강하제, 신경 안정제의 투약 이외에 다른 고혈압 치료 방법이

없이 고혈압이 심한 환자 역시 약효가 강한 혈압 강하제, 신경 안정제를 주고 주사를 놓는 것 이외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다) 장석구가 서울구치소에서 중증의 고혈압 환자가 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즉,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수감 환경, 억울한 구속과 친구들의 사형으로 인한 심적인 분노 등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 사망 경위 사실

(1) 1975. 10. 14. 뇌출혈 발병되어서 1975. 10. 15.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의 경위

(가) 장석구가 1975. 10. 14. 뇌출혈로 쓰러져서 1975. 10. 15. 10:30분 경에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시간은 1975. 10. 15. 21:30이고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18시간이라고 해서 발병시간이 1975. 10. 15. 03:10이다. 그런데 신분장에 기록되어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으로의 신병인도 시간은 10:30으로 발병시간과 무려 7시간 20분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고혜경은 장석구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재소 중이던 일반수로부터 장석구가 새벽에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 동인이 업고 치료를 요청해도 구치소 측에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시간은 사망진단서에 발병 시간대와 거의 일치한다.

(나) 장석구는 적십자병원으로 신병이 인도되기 전까지 거동하지는 못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병원에서 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

(다) 장석구가 갑자기 발병하여서 쓰러진 과정은 분명치 않다.

(2) 적십자 병원에서 사망한 경위

(가) 장석구는 1975. 10. 15. 10:30~11:00 사이에 적십자 병원으로 신병이 인도되어서 응급실로 옮겨졌다. 동인은 적십자병원에서 바로 의

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바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다. 장석구는 병원에서 구석에 쭈그리고 누워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머리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심장은 쿵쿵 들릴 정도로 급하게 뛰고 있었다. 장석구는 이미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21:10에 적십자병원 의사가 산소마스크를 떼어 내자 심장 및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장석구의 처 고혜경은 10. 15. 15:00에서 16:00 사이에 적십자 병원으로 도착했으나 장석구가 누워있던 중환자실로 추정되는 병실에는 사복입은 사람 3~4명이 장석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동인들은 고혜경이 항의를 하자 병상에 누워 있는 장석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고, 이어서 시동생 두명, 친척 몇 명, 장위동 교회 안신부, 이성재의 처, 전창일의 처, 세브란스 병원 의사(선교사) 1명 등이 적십자병원으로 왔다.

(다) 장석구는 사망 이후 서울적십자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라. 사망 이후의 사실관계

(1) 장석구 관련 서울구치소 기록의 유실

서울구치소의 규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나 형의 종료 등으로 환자가 출소하게 되면 병력표, 건강진단부, 접견표, 서신표는 신분장에 편철하여 명적과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다. 병력표에는 의사의 진료기록과 차입 약품 담당자들이 약품을 차입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어있고, 서신표에는 서신 교환 내용, 접견표에는 변호인 접견 내용, 가족 면회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석구의 경우는 고혈압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중증의 고혈압으로 두 차례나 입병사하였으며 결국 뇌출혈을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장에 병력표와 건강진단부가 누락이 되어 있다. 또 장석구는 김종길 변호사와 접견을 하였고 고혜경과도 면회를 하였으나 접견표가 누락되었고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나 서신표 역시 누락되어 있다. 더 나아가 신분카드 거실 지정란에 거실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석구의 구치소 기록들이 서울구치소나 중앙정보부 등 외부 기관에 의해서 은폐되었을 개연성이 크나 조사할 대상이 많은데다가 조사 기간마저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

(1) 장석구는 1961년에 민족일보를 통해서 혁신계 운동에 가담하였고, 1964년에는 대일굴욕외교반대운동, 1969년에는 삼선개헌반대운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1960년대에 한시적인 범국민운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전창일과 같이 자강학회를 통한 반일민족자주□반독재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70년대에는 남북공예사를 하면서 자강학회 활동을 계속하고 장준하와 함께 유신반대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장석구가 사망 이전에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명백하다.

(2) 장석구의 사망은 권위주의 정권(유신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 또한 장석구가 박정희와 유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고 동인이 긴급조치 4호로 인한 학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를 걱정하였다. 그래서 장석구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수배된 이성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행위는 유신정부에 저항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석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

나.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대한 판단

(1) 민청학련 사건은 긴급조치 4호에 근거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큰 범주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석구는 □민청학련□ 활동에 참여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긴급조치 4호는 장석구가 검거되어서 유기 징역을 선고받게된 법적 원인이다.

(2) 긴급조치 4호는 유신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은 국회를 해산하고 행정부인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입안,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헌법이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3권 분립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이다. 또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권은 선포요건이

광범위하고 국회의 사후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긴급조치 4호의 경우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인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집회시위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포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고 법적으로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였으며, 4월 3일 긴급조치 4호 선포 이전의 민청학련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 4월 8일까지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여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3) 장석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자체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따라서 장석구 사건의 발생 원인이면서 처벌 조항이기도 한 긴급조치 4호는 위법한 법령이고, 긴급조치권을 인정하는 유신헌법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이며, 장석구가 이성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것은 인혁당 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석구의 인신 구속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5) 장석구는 구속 이전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 이후 중증의 고혈압 환자가 되었는데, 제반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가혹행위, 장기간의 구속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아니한 점이 발병과 증세의 악화를 초래하였다할 것이다.

(6) 또한, 사망 직전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975. 10. 15. 03:10경 이미 뇌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고 주위에 있던 성명 불상의 재소자가 장석구의 위급함을 호소하였다. 당시에 서울구치소에는 보안과 교도관이 병사와 사동에서 24시간 계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석구가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즉시, 또는 발병시간으로부터 한 두시간 내에 구치소에 인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중증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할 시설이나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의 경우 즉시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관에게 즉시 연락을 하고 중증통보를 한 다음에 당직을 하는 소장 대리의 판단 아래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시간 20분이 지연된 같은 날 10:30에서야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장석구의 신병이 인수되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초기의 응급조치가 생명을 건지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장석구의 경우 7시간 이상 방치된 후에서야 적십자병원으로 신병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이

러한 치료 지연 역시 장석구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장석구의 신병 구속 자체가 위법한 행위였고 상당한 가혹행위와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평소 적절한 치료는 물론 응급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 바, 장석구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위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

다. 권고 사항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고문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비상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결정되고 전격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이유, 공판조서 허위작성의 배경, 유언이 허위 작성되고 사체가 유족들의 의지대로 처리되지 못한 이유, 수사단계에서 사체 처리까지 지시가 내려지고 집행이 이루어진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조사기한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과거 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목되는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다시 조사를 할 것을 권고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장석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장석구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공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6.

위원장	한 상 범	<input type="checkbox"/>	위원	김 준 곤	<input type="checkbox"/>
위원	이 석 영	<input type="checkbox"/>	위원	안 병 옥	<input type="checkbox"/>
위원	박 은 정	<input type="checkbox"/>	위원	이 원 영	<input type="checkbox"/>
위원	이 윤 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백 승 현	<input type="checkbox"/>

사건번호 74도3323 (74형3344)

상 고 이 유 서

상고인 도 예 종
(서울구치소 재감중)
3상3

본 적 경북 대구시 서구 [redacted]
 주 소 경북 대구시 서구 [redacted]
 성 명 도예종
 생년월일 1924년 12월 25일생
 직 업 삼화건설주식회사 회장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상고요지

본인은 이 사건에 전연 관계된 바 없음으로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기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님으로부터 부당하게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으로 본인은 선고에 불복 상고를 제기 하는 바입니다.

내 용

본인의 공소장을 보면 대부분이 모두(冒頭)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모두(冒頭)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인 1964년에 본인이 관련되었던 인혁당사건의 재연입니다. 인혁당사건이란 당시에 이미 검사의 1, 2차 조서 및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혁당은 조직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며 따라서 본인이 당수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一. 공소장 모두 사실에 대하여

(가) 김상한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전연 모르며, 만난 사실도 없고 김상

한에 대해서는 우흥선으로부터도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 김배영에 대해서는 서기 1967년 11월 경 김배영 사건 때 본인도 중앙정보부에 구속되어 약 25일간 취조를 받은 후 혐의가 없다고 하여 석방된 사실이 있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二. 제 조서의 임의성에 대하여

(가) 본인이 서기 1974년 4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장장 50일간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4, 5차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서기 1974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철야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본인이 검사에게 취조를 받는 방이 중앙정보부 6국 311호실입니다.

이 311호실은 본인이 중정 취조시 철야 심문과 고문을 당한 방이며 검사취조시는 출입문을 열어놓고 외부에서 취조상황을 계속 확인했으며 취조도중 중정 모간부가 들어왔다 간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정 취조시 수십 차에 걸쳐 심장병인 협심증까지 일으켜 드디어는 수차 줄도 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중정에서 사준 외제응급 협심증치료제인 설하정 리트로구리세린정을 먹고 여러번 되살아났으며 그 약은 현재도 구치소에 비치 중에 있습니다.

협심증 발병이 말해주듯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살벌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라) 검사취조시 검사님에게 중정의 조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취조를 중지하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사실대로 조서를 다시 고쳐 오지 않으면 검사로서는 조사를 못하겠다고 거부했으며 검사에게 부인하면 즉시 중정에서 다시 불러가 고문을 하니 중정의 조서를 고칠 수가 없었고 결국 중앙정보부 조서와 검사조서가 일치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검사조서는 검사님이 자문자답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본인은 검사님에게 계속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검사조서는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 중앙정보부에서는 사전에 인쇄된 유인물을 수사관은 부르고 본인은 받아쓰는 식의 자필진술서였으며 이를 본인이 거부하면 이미 상부에서 결정되어 인쇄까지 되었는데 상부지시를 거역 할 수도 변경 할 수도 없

다고 하며 거부하면 또 고문을 당해야 할터인데 건강이 건딜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중정의 의사에 승복해야 됴므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오히려 신상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니 순순히 받아쓰라고 강요하여 자필진술서라는 것이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분위기 속에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된 제 조서는 전연 사실도 아니며 임의성도 없는 것입니다.

三. 증거 및 증인에 대하여

(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소장의 대부분이 십년전 인혁당사건의 재연이기 때문에 당시의 1, 2차 검사조서 및 판결문을 1, 2심 재판부는 마땅히 증거물로 채택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한 것은 증거법칙에 어긋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1심 재판은 한사람씩 분리심리를 했고 2심 재판은 일체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변호사의 반대심문도 담당 피고 이외는 못했고 2심에서는 변호사의 반대심문마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르고 있음으로 중앙정보부 및 검사님에게 관련자와의 대질을 계속 강력히 요구했고 1,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관련피고의 증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대질도 변호사의 반대심문도 증인신청 등 마땅히 허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채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본인 집에서 압수된 「로시아혁명의 교훈」이라는 책은 미국의 저명한 종교철학자의 저서를 우리나라의 저명한 철학박사 하기락 교수의 번역판입니다. 하교수가 본인에게 출판기념으로 증정한 책이며 내용인즉 세계최초로 기도한 종교철학적 입장에 서서 로시아혁명의 비인도성과 반인간성을 비판 폭로한 철저한 반공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불온서적으로 오인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용함은 심히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四.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제 1 범죄사실

서기 1971년 조흥은행 대구서지점 앞 노상에서 공소 외 이재문과 8년 만에 한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차 한잔도 나눌 시간이 없어 걸어가면서 안부만 묻고 헤어졌을 뿐 공소장에 적시된 대화는 한마디도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 제 2 범죄사실

서기 1973년 10월경 서도원을 13년만에 한번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요통으로 누워 있을 때 이웃사람들이 신침이라고 할 수 있는 용한 침술사가 있으니 침을 맞아 보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소개를 받아보니 바로 서도원씨 였습니다. 침을 맞고 이웃사람과 같이 침의 신효성과 동양의학의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다른 이야기는 일체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 제3, 4, 5 범죄사실

이수병씨는 7년만에 서기 1973년 12월 서울 청진동 해장국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두 번째는 서기 1974년 2월경 다방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향소이유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만 단순한 사업관계이아기만 했을 뿐 쌍방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계속 접촉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사업관계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화제가 나눌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五. 지하조직에 대하여

(가) 지도위원 지하조직 지도부 등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아는바 없으며 이와 같은 용어 자체를 전부 중정의 취조과정에서 들었을 뿐입니다.

(나) 공소장에는 본인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고 승낙을 했다고 되어 있으나 본인은 추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승낙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지도위원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추측컨대 구태여 해석을 하자면 자문을 말하는 듯 하나 지하조직에 지도위원이란 형식이 있는 것인지 또한 무기능 무권리의 지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소장의 사실은 전부가 조작된 사실입니다. 모두(冒頭)사실도 그러하거니와 범죄사실 역시 본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리를 판단하더라도 학생데모를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헌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정권을 수립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신병자가 아니 이상 그런 망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평소부터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사회관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서기 1967년 출소 이후로 정치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았으

며, 사업을 하게되면 자연히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법이며 따라서 본인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외의 인사들과는 접촉하지 않았으며 또한 여하한 사람을 만나든 사업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것도 4월 초 신문지상을 통하여 비로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인을 이 사건에 관련시킨 것은 십년 전인 인혁당 사건을 근거로 정치적인 제물로 삼으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평온하게 성실한 시민으로써 이 세상을 조용히 살아가는 본인을 억울하게도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범죄자로 만들 수야 있겠습니까

본인은 확신합니다. 법은 기필코 죄지은 자에게 벌을, 죄 없는 자에게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을, 우리나라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고심 재판장님 및 판사님에게 간절히 앙원하나이다.

서기 1974년 12월 일

(서울구치소 재감 중)

상고인 도 예 중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입회교도관 이계룡

대 법 원 귀 중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도예중
동 전재권, 동 이태환 등의 변호인
변호사 황계룡

위 피고인 등에 대한 귀원 74도 3323호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 등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중 략 소 서 두 올 사)

다 고 음

위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범죄 사실은 제1심 판결 이후 사실 기재와 같은 바

一. 원심 판결에 의하면 ... 살펴건데 일건 기록과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인

1. 피고인 등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되는 각 진술 부분

1. 증인 김인기, 동 김종운, 동 홍중흠, 동 김종태 등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부분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기재 부분

1. 검찰관 작성의 여정남, 정화영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기재 부분등과 피고인 도예중에 대하여는 압수된 러시아혁명의 교훈 1권, 김대중의 대중경제 백문 백답 1권, 우리는 왜 국민의 당을 하여야 하는가(제1집 국민의 당 가칭 창당준비위) 1권, 신문 발췌(사회참상) 10목을, 피고인 이태환에 대하여는 김대중 대중경제 백문 백답 1권, 필적(명단) 일부를, 피고인 전재권에 대하여는 일산

회(등산) 회원수첩 1개, 도내 산악단체 및 친선 등산 대회 회원 명단 1부, 공단 정우회에 경리관계 노트 1권 이외 각 피고인등에 대한 진술조서 및 자필 진술서 그리고 참고인등에 대한 진술 조서에 10년 전의 전과사실 등을 종합하여 위 검찰관 작성의 각 조서등이 강요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등과 참고인 등은 제1심 법정에서 검찰관 작성의 위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등은 북괴 집단의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하게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공산주의 제도와 이념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남한내의 동조세력을 구축하여 남한의 공산화 혁명을 유발시키려는 활동으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을 지실하고 있었으므로 동피고인등에게 국가 변란과 국헌문란의 목적의식이 있다고 판정하고 위 피고인등에 대한 본건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즉, 본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도 아니요 누범사유도 아닌 전과사실과 피고인 등에 대한 악성 등을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케 한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도예중은 4.19 이후 혁신정당에 투신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산주의를 신봉하게된 이래 자본주의 국가체제 등 특권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노동대중인 노동자 농민의 빈곤이 극심하므로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신념하에 국가를 변란하고 북괴가 주창하는 노선에 따라 통일을 하기 위하여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중 1962년 3월 경 서울 서대문구 정동 소재 이화여중 입구 노상에서 상 피고인 우홍선과 접선되자 동년 4월경까지의 사이에 4-5차례에 걸쳐 서울 삼청공원, 사직공원 등지를 전전 회합하면서 과거 혁신키투를 규합하여 북괴노선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통일을 위한 혁명역량을 구축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1962년 5월 일자미상 경 20:0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 뒷산에서 동 우홍선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1962년 1월경 인민혁명당 창당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동당에 입당과 동시 동당 섭외책으로 취임하여 좌파세력을 확대하였다가 학생 봉기, 군대 봉기 또는 일반 인민대중의 봉기 등으로 남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데 합의하고 1962년 5월 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원용건설주식회사 사장실에서 동 우홍선 및 남파간첩으로서 비밀지하당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실질상 당수였던 김상한 군과 회합하고 북괴와 규합 통일정부를 수립하기위하여 당의 사명을 완수하자는 등을 토의 합의하고 그 시경 동 우홍선과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뒷산 솔밭에서 회합하고 동 당위원장 김상한을 파북 월북 시킨 사실이 있고 1962년 6월경부터 지방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김규철가를 비롯하여 부산시 광안리 소재 해수욕장 등지를 전전하면서 이미 포섭된 혁신계 인사 10여명과 회합하고 인혁당 강령 규약을 작성하고 1962년 8월 일자 미상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소재 태양극판회사 사무실에서 동 우홍선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월북한 김상한군은 월북 3개월 후부터 매주 월요일 북한 방송을 통하여 연락하고 북괴로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1962년 10월경 동 태양극판회사에서 동 우홍선과 회합하고 북괴로부터 새로운 공작 지령과 공작금 수령을 목적으로 동 당 경남도 당책 김배영을 북괴하자는데 합의하여 동 인을 동 년 10월 29일 일본 경유 월북 탈출시키고 1964년 3월 경 동 인민혁명당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서울대학내 조직을 강화하고 동 학생 조직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반정부 데모를 격화시켜 6.3 비상계엄사태를 수발케 하는 등 활동하다가 1964. 7월 하순 경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전시 김상한, 김배영 등의 월북사실과 북괴와의 연락관계 등을 일절 부인하고 반공법위반 사실만을 시인함으로써 징역 3년의 형을 받고 복역 후 1967. 8. 25 석방되는 등 신분의 합법을 쟁취하였고 1967.9.3 월북하였던 전시(前時) 김배영이가 인혁당 재건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검거됨으로서 직접 북괴의 지령 사실을 접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염원하는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동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여 혁명역량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 데모를 선동하여 정국을 혼란시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유혈폭력으로 대항세력을 돌파하고 국가기관을 강점하는 공산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 진보적인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애국적인 민족자본가 및 반정부세력 등과 연합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한 다음 점차적으로 북괴와 연합하여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시켜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일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된다는 신념을 포지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결의하였고, 피고인 전재권은 평소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있던 중 1968.10월 경부터 대구시 대신동 105번지에서 승리나라점을 경영하면서 1970.8.15 이념을 같이 하는 전좌익인전과자공소 외 전능 및 상 피고인 송상진 동 서도원과 8.15 등산회를 조직하고 경북지방 산악지대를 등산하면서 공산주의 정부도 개혁하자는데 상호의사 상통되어 불순 학생을 포섭 학생 데모를 선동하여 현 유신헌법체제를 부정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으며 피고인 이태환은 평소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북괴공산 노선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기회만을 염원하여 오던 중 1973년 말경 학원사태와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으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동인 등

의 망상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도래되고 있다고 오관하고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의 경북 지도부 부원으로서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자체역량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북반부 인민들은 동족으로서 남조선 인민을 적극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북괴의 주장에 따라 자체 역량의 주장에 따라 자체역량의 구축을 위하여 조직활동중인 이념을 같이하는 상 피고인 송상진과 회합하면서 동인에게 포섭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건 범죄 사실 모두(11頭)에 기재되어 있는 1964.7월 경의 인민혁명당 사건의 내답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신문기사 등 자료를 통해 보면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피고인 도예중 등 41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히고 이들은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고 발표함에 있어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으로 조직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하에 움직이는 반국가 단체인데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하여 당조직을 확장하려다 발각되었다고 공표하였으나 그 뒤 이 사건은 같은 해 8.17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이를 조사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용훈 부장검사, 김병기 검사, 장원찬 검사, 최대현 검사)은 약 20일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이 인민혁명당 사건은 기소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고 관련 전피의자들에게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세웠던 바 이에 대해 검찰 고위층은 기소토록 강력 조치했으나 공안부 검사 전원은 죄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기소장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서주인 서울지검장은 구류 만 3일인 1964.9.5이 사건의 피의자 등을 한번도 조사한 바도 없는 당일 숙직 중이던 형사제 3부 정명표 검사로 하여금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해온 인민혁명당 사건의 도예중 등 47명 중 26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은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케 했고(이미 참고로 제출된 바 있는 별첨 세문출판사 해방20년 기록편 750 페이지의 인민혁명당 사건의 검사의 항명 및 1964.9.7자 경향신문의 인민혁명당 사건기사) 이로 인하여 동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던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김병기 검사, 장원찬 검사, 최대식 검사 등은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고 이는 정치문제화되어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노동당강령을 골자로 하는 규약을 토대로 조직된 불법단체이고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6.3 학생 데모를 배후에서 조종

했다고 말했으나 그 때 국회의원들은 인민혁명당사건으로 학생 데모의 주동자를 때려잡기 위해 조작됐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학생 데모로 인한 비상계엄선포를 합리화하고 계엄 후의 정부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 요지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별첨 1964. 9.9자 같은 해 9.10 자 경향신문의 인민혁명당 사건 기사)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앙정보부의 인민혁명당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문설이 튀어나와 당시 한국인권옹호협회에서는 1964.9.11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교도소에서 도예종은 취조 모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때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는데 촬영실이라고 하는 고문실에서 발가벗기어 머리에서 물을 붓고 수건과 로프줄로 결박을 하고 전기줄을 양 엄지 발가락에 끼우고 수건으로 코와 입과 얼굴을 덮어씌운 후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고문을 당했음을 밝혀냈고 그 외 정도영, 임창순 등도 전기, 물고문을 당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별첨 1964.9.12 자 경향신문의 인민혁명당 사건기사) 그리하여 검찰은 다시 서울고검의 한옥신 검사 담당으로 이 인민혁명당 사건을 재수사케 한 결과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이 복귀가 남파한 간첩들과 접선했다는 확증을 잡지 못했으나 복귀가 내세운 평화통일론 등을 내세워 강령으로 삼는 등 복귀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혐의만은 있다는 결론을 얻고 이미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중 학생들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공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 공안부 검사들의 사표를 반려하는 한편 인민혁명당사건 관련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문사건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이 피고인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 수사기록을 백지화하고 당초 구속 기소된 26명 중 기결수를 제외한 25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 등이 고문 당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피고인 등이 가해자의 신분과 인상을 알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고문한 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별첨 1964.9.17자 같은 해 10.20자 경향신문의 인민혁명당사건 기사, 위해방 20년 기록편, 인민혁명당 사건의 수사 항명)이 인민혁명당 사건은 위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발표한 것과는 달리 복귀가 남파한 간첩들과 접선했다는 증거도 없고 따라서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반국가단체도 아님이 밝혀지어 결국 피고인 등은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1964년 경의 인민혁명당 사건은 이상과 같이 조작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인민혁명당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당명을 부쳐 수사한 것일 뿐 아니라 이번에도 위 피고인 등은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과 전혀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기소하였고 특히 피고인 도예종에 대해서는 1964. 8 경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바 있던 그 당시의 인민혁명당 사건의 동 수사 기관의 의견서에 의해 조성된 것이고 거기에 동 피고인이 위 인민혁명당 사건 때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1967. 8. 25 석방된 후에 김배영이가 복귀에서 남파된 간첩이라고 하여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받고 있을 때 동인과 관련성 여부 혐의로 조사받기 위하여 다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약 25일간 조사받고 무혐의로 석방된 사실을 마치 동인을 율복시키는데 협조한 것처럼 위 10년 전의 인민혁명당 사건에 추가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내란죄의 성립에는 국토참공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라고 함은 이를 접선의 목적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직접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폭동을 연유로 하여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폭동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사태의 현출을 기하는 것은 내란죄로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가의 기본조직을 강압으로 해산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음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형법 91조 대법원 1968. 3. 5 (판결 66 도 1056 호)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 등은 내란 음모 이 점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가 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 등이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활동하였거나 공산주의적 통일을 위한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공소장 기재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원과 회합한 사실이 있다거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소위 남파 간첩들의 비밀지하당인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된 학생 데모를 선동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 없고 피고인 도예종으로부터 압수된 러시아혁명의 교훈, 김대중의 대중경제백문백답, 우리는 왜 국민의 당을 하여야 하는가, 신문발췌, 편지 대답, 피고인 전재권으로부터 압수된 일산회(등산)회 수첩, 도내산악단체 및 친선등산대회 회원명부, 공원경우회 경리관계 노트, 피고인 이태환으로부터 압수된 김대중대중경제백문백답, 회사기술자명단 등 만으로 국가기관을 강점하는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으며 증인 김인갑 동 김종운(김재홍의 오기인 듯함) 동 홍종흠 동 김종태(최종태의 오기인 듯함) 등의 각 증인은 피고인 도예종, 동 전재권, 동 이태환에 대한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찰관 작성의 여정남, 정화영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형사사건 기록에 편철된 것으로

서 1974.6.25 자 공판기일에 이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이 조작된 위 10년 전의 인민혁명당 사건을 기초로 하여 위 피고인 등에 대하여 내란의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분명히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법률 해석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결내용에 있어 피고인 등에 의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 368조 제1항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 취지는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라는 뜻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은 피고인 도예중 동 전재권 동 이태환에 대하여 각범죄 사실을 적시하여 놓고 증거 설시에 있어 그 범죄 사실 중 어느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증거가 어느 범죄를 증명할 증거인지 또는 판시 소위중 어느 행위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제1심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도저히 판별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결국 군법회의법 제 3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살피건데 증거의 취사선택은 심판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인 바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피고인 등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검찰관 작성의 각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논리상 또는 경험법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 10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군법회의법 제 359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모두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등은 제1심 법정에서의 본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이에 연관되는 상 피고인 전창일은 1974.6.19 공판기일(기록 343 페이지)에서의 도예중과 서도원은 잘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이외에 상 피고인 우홍선으로부터 피고인 도예중이를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 및 서울 지도부의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 피고인 이수병은 위같은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중은 잘 아는 선배이지만 동 피고인을 위 지도위원으로 추대한 사실이 없고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지도위원으로 추대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1974. 1월 중순 경에는 본인이 몸이 아파서 피고인 도예중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상 피고인 서도원은 위 같은 공판 기일에서의 1971.4.15 상 피고인 하재완을 만난 사실없고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써준 사실도 없으며 동 피고인 공소 외 이재문 상 피고인 송상진 등과 회합하여 피고인 도예중, 서도원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부서책임자 등에 대하여 논설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 피고인 송상진의 위 같은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중 동 서도원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전재권으로부터 금오만원을 빌린 것은 학비(1973. 12월 경 그 중 금 오만원은 동피고인의 아들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와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였고 피고인 이태환으로부터 금 오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상 피고인 우홍선은 위같은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중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들 공동피고인 등의 위 진술은 피고인 도예중 동 전재권, 동 이태환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또 검찰관 작성의 위 피고인 등에 대한 각피의자 심문조서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거나 강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즉, 위 피고인 등은 위 같은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앞에서 진술은 직접적인 고문 내지 협박의 결과에 의한 것이고 조사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으므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도예중은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10년 전의 위 인민혁명당 사건기록을 가져와서 동기록의 의견서에 기재되어도 수사관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전재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금 오만원을 상 피고인 송상진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니 수사관이 부르는대로 작성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1974.6.17의 제1심 첫공판기일 몇일 전인 같은 해 6.6과 6.8양일간에 수사기관원이 와서 자기가 부르는대로 작성하면 곧 나가게 된다고 하면서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것이었고 또 그 때 비로소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태환은 상 피고인 송상진은 고향사람이고 친척 누님

의 사위인데 동 피고인에게 금 오만원의 제공한 사실이 없고 진술서는 수사기관에서 부르는대로 작성한 것이며 이에 불응하면 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앞에서의 진술때에도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도중에도 지하실로 데려가서 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와같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해오다가 불응하면 고문을 하거나 자백하면 잘봐주겠다고 기망하여 자술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피고인 등의 무인을 받은 다음 그 내용과 같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정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피고인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지극히 신빙력이 없고 또 피고인 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 수사기관 작성의 각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결국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법회의법이 채용한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四.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 도예종 등은 상 피고인등과 함께 북공산집단과 연합된 통일공산국가건설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데모를 선두로 정국을 혼란시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유혈폭력으로 대항세력을 돌파하고 국가기관을 강점하는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목적으로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의 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의 서울지도부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 연락 책임자, 금전조달 책임자, 학원조종 책임자 등을 정하는 등 부서를 결정한 후 빈번히 회합하면서 그 실행방법을 모의 계획한 사실관계가 이와같다면 이는 그 목적이나 조직 그리고 방법 어느 면으로보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결성한 유형적 결합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구성죄에 있어서 단체(결사 또는 집단)라고 함은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하고 누가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위력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구성원이 수명인 단체는 민중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반국가단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실현불가능 상태의 조직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안보법상의 결사 또는 집단에 해당된다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56.6.29 판결)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또는 증거) 없이 사실확정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등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한 사실도 없고 이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본건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누가 주동이 되어 즉 수괴는 누구이며 몇 명으로 조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 피고인 전창일, 동 서도원, 동 이수병, 동 우홍선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4.6.19 공판기일에서의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였으므로 소위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기 위한 공산 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조직한 사실, 피고인 도예종이 위 지도부의 지도위원으로 된 사실 및 피고인 전재권, 동 이태환은 위 지도부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의 규모와 그 주장이 지극히 현실불가능한 결사에 불과한 사실은 조직인원이 몇 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금이 모두 합하여 기십만원이며 그 주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거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이 확정된 사실이 적법증거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음은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살피건데 군법회의의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소송관계인의 심문이나 진술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또는 그 사건에 관계 없는 사항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바(군법회의법 344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 공판조서를 살펴보니 원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변호인의 반대심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권리제한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 340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 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주의적 소송형태를 채용하고 있어 이는 항상 방어에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증명

력을 다룰 권리 즉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규정으로서 반대신문의 실질적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은 본건 제2차 공판기일(1974.6.19)과 제3차 공판기일(1974.6.24)에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 심리하고 위 피고인 등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 등에 대한 피고인 등 및 변호인의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결국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건은 위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작성의 서류가 다른 피고인 등에 계도 사용될 증거이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을 다루고 반증을 세워 그 증거가치를 충분히 다투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되는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변호인이 수임한 피고인에 한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을 뿐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원심에서 변호인은 다시 위 피고인 등에 대하여 항소이유 기재사실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보충신문을 할 것을 구한 바 법무사는 불필요한 심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공판조서 3520 페이지) 관련된 공동피고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마저 제거하여 결국 인정심문에 대답한 이외에 아무런 말한마디없이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분명히 군법회의법 제 344조 동법 340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입니다.

六. 원심판결은 몰수의 이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즉 심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48조 1항 1호를 적용하여 주문에서 압수된 증 제2호(러시아혁명의 교훈 1권), 증 제3호(김대중의 대중경제백문백답 1권), 증 제5호(우리는 왜 국민의 당을 하여야 하는가), 증 제6호(신문발체), 증 제7호(편지봉투)는 피고인 도예종으로부터 증 제52호(김대중 대중경제백문백답 1권), 증 제53호(필적명단)는 피고인 이태환으로부터, 증 제200호(일산회 회원수첩1개), 증 제201호(도내산악단체 및 진선등산대회회원 명단), 증 제202호(공원경우회 경리관계노트)는 피고인 전재권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한 위 물건들은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이 물건들은 위 피고인 등의 본건 범죄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들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임을 확인함이 없이 형법 48조 1항 1호를 잘못 적용하여 몰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74. 12. 11.

피고인 도예종, 동 전재권, 동 이태환 등의 변호인
변호사 황계룡

대법원 귀중

(사건번호 74형3344)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서도원(徐道源)

서울구치소 재감중 5

본 적 경남 창녕군 [redacted]
 주 소 경북 대구시 [redacted]
 성 명 서도원(徐道源)
 생년월일 1923. 3. 27생(51세)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상기 본 피고인은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 동 1974. 9. 7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기각되었는 바 사실과는 너무나 틀리는 공소내용과 과중한 형량에 대하여 불복하고 아래와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기

첫째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및 경찰관 관여하에 작성한 피의자 자필진술서와 검찰관 작성의 조서 및 검찰관 관여하에 작성한 피의자 자필진술서는 무지한 고문과 협박하에서 강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며 따라서 공산폭력혁명을 시도하였거나 학생데모를 유혈 폭동화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계획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편 본 피고인이 인민혁명당의 재건을 지령한 사실은 없으며 저를 서울지도부나 경북지도부의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며

따라서 지도위원으로 취임할 것을 수락한 일도 없습니다. 지도위원 문제는 공소장대로라 하더라도 경북지도부에서는 이 지도부를 '하재완, 여정남, 이재문, 송상진 등이 관장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를 전복한 다음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지도부에서는 '동 조직은 우리가 4인 지도부에서 조종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권이 4인에게 있으며 소위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권도 실무도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며 4인 지도부원 보다는 우위 일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사실 전문에서 조총련 망원인 김태구 사건에서 혐의사실 등을 부인하여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마치 범죄사실은 있는데도 무죄가 된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태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두 번씩이나 입원한 정신착란증 환자이며 이 사건에서 주범인 김태구를 비롯한 피고인 16명 전원이 무죄가 된 사건으로 전연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재완, 이재문 등과 접선하여 교양을 시키며 동조자로 포섭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하라고 하고 인민혁명당과 같은 공산비밀지하조직을 재건하여 정부를 전복한 다음 북괴와 연합하여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결의 하에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운운한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공소 사실 중 하재완가에서 여정남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적은 없으며 하재완의 질인 하종은의 공부방에서 전태일 추도사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73. 12 경 하재완으로부터 여정남의 일어강습소 소개를 의뢰받고 삼락일어학원에 소개해주마고 한적이 있으며, 73. 12 경 서울 청진동 소재 야자수 다방에서 이수병을 만나 여정남의 일어강습 지도를 부탁한 적은 있으나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1974. 4. 5. 본인 집에서 하재완과 만나 15일경에 서울에서 만나 여정남을 만나보자는 말은 하였지마는 여정남의 은신문제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1974. 4. 13. 여정남을 대구에서 만나 하재완에게 연락할 전화번호를 가르켜 준 적이 있으며 1974. 4. 15. 서울 "희" 다방에서 이수병을 만난 적이 있으며 동일 동 장소에서 하재완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밖의 공소사실은 일체 사실 무근한 일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언도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긴급조치 4호는 어디까지나 소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이겠는데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주동 인물들이 사형이 아닌데 간접적인 관계밖에 없는 본 피고인에게 사형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한편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된다는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찰 취조는 물론 검찰조서도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한 것이 아니며 비상보통군법회의나 비상고등군법회의도 피고인들을 포승으로 묶어둔 채 재판을 했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충분히 자기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증인채택 등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포에서 취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완전히 인권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처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에 보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위정자들은 멀지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현명하신 대법관 여러분께서는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 사건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서도원(徐道源)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입회교도보 구제관

대법원 귀중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하재완(河在完)

피고인 표시

본 적 경북 대구시 [redacted]
주 소 경북 대구시 [redacted]
성 명 하재완(河在完)
생년월일 1932년 1월 10일생(당 42세)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상고의 취지

본 피고인은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여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개진하나이다.

상고의 이유

원심 및 항소심은 모두다 법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중앙정보부 및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추출 한정하여 심리하고
둘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증인 및 유리한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셋째 피고인의 진실하고 진정한 진술과 변호인의 심리 및 접견마저도 묵살한 채 검찰의 일방적 심리만으로 결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률해석상의 잘못과 사실의 중대한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고이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나이다.

내 용

피고인은 원적지인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응리에서 부친 하대근의 3남으로 출생하여 이방국민학교를 거쳐 1946년 대구공업중학교에 입학 1948년 3월 동교 3년을 중퇴하고 1950년부터 1951년 10월까지 이방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同年 10월 말에 군에 지원입대 1958년 3월 만기제대를 하고 同年 6월부터 상업 및 양조업에 종사하다가 1962년 7월부터 1968년 3월까지 원적지에서 거남 양조장을 위탁 경영다가 同 양조장 매도로 1968년 3월 중순 본적지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201번지로 이사한 후 건축업, 출판업 및 주택 수리 매매업에 종사하다가 폐병으로 1972년 12월부터 메추리 사육을 하다가 사료과독과 폐농양 재발로 폐업하고 치병 요양 중에 있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1947년 4월경 대구공업중학 2년 재학시 아무것도 모르고 상급생의 강요에 못이겨 대구공업중학교 민주애국학생동맹원으로 가입 중 1948년 3월 하순경 대구지방소년원에서 군정청 포고령 위반으로 3개월간의 교화 처분을 받고 교화 생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연령은 16세 소년으로써 아무 사상적 의식도 없었을 뿐 석방 후 정치적 혼란기에 아무 것도 모르고 일시적 잘못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원적지에서 부모를 모신 가사에 종사 중 6.25 동란이 일어나고 동년 7월 모함으로 창녕경찰서에 일개월간 예비 검속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검속된 대부분이 처형되었으나 피고인은 무혐의로 석방된 것입니다. 그후 군에 지원 입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육군특무부대로 전속하여 대공사찰의 일선에서만 5년간 충실히 근무하여 지난날의 일시적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였으므로 금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1961년 3월초 경 당시 우후죽순격으로 혁신정당 사회단체가 난립할 시기에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청년운동을 하는 청년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에 친지와 권유로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별활동을 한 사실 없음으로 5.16이후 아무 일없이 본적지에서 가사에 종사하다가 1962년 7월부터 1968년 3월 중순 경까지 원적지인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거남양조장을 위탁 경영하였으므로 공소장 모두(昌頭)에 기재된 사실과 같은 불온사상을 포지하지도 않았으며 복귀방송도 청취한 적도 없으며 상피고인 서도원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이니 지도위원이니

지령이니 하는 내용 등은 터무니없는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형언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혹독한 고문과 협박 등으로 사전에 중앙정보부 취조관이 작성한 복사된 각본에 의하여 취조관은 읽고 피고인은 받아쓴 허위 자백서인 자필진술서이며, 그 자필진술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중앙정보부(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심문조서이며 검찰관 심문조서는 피고인의 임의성(육체적, 정신적, 장소적)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하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의견서대로 검찰관은 읽고 입회 서기가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며 5월 27일 1차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해 놓고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연일 혹독한 고문과 협박 등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사전에 작성된 공소사실 32항과 똑같은 복사된 각본대로 취조관은 읽고 피고인은 그대로 받아쓰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 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자필진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자필진술서에 기재된 32항과 똑같은 내용의 조서에 의하여 중앙정보부 간부실에서 6월 9일 작성된 것이 마지막 검찰관 심문조서이고 공소사실의 32항입니다. 검찰관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미리 작성된 조서를 검찰관은 읽고 입회 서기는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며 피고인은 4월 28일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탈홍이 되고 폐농양증이 생겨 취조관이 시키는대로 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하에서 모든 자필진술서 및 심문조서가 작성되었으며 너무나도 엄청난 범죄사실 등을 허위날조 함으로 반듯이 공판과정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취조관 및 검찰관 심문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응한 것입니다.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1969년 7월경 공소 외 이재문의 소개로 상피고인 여정남을 피고인 장남의 학력보충을 목적으로 가정교사로 입주시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목적으로 입주시킨 사실은 없으며 상피고인 송상진과 공소 외 이재문 등과 회합한 사실은 없으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한 사실 등은 모두 허위날조한 것입니다.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1969년 7월경 상피고인 서도원 및 공소 외 이재문 등과 회합한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날조한 것입니다.

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

1969년 7월경 상피고인 정만진 1차 피고인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사제 대학동창으로 사제(舍弟)를 상면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지 공